

사 업 명
(1)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9,818	35,468	35,468	31,538	32,774	△2,694	△7.6

4.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 EBS의 공익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제고를 통하여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익증진 및 만족도 향상 추진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EBS 대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고품격 청정 신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청소년 프로그램)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초·중학 개념정리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실용적인 적성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지원

- (2TV 프로그램) 국내 최초의 다채널방송(MMS)인 EBS 2TV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MMS 방송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학·창의·융합·안전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민적 정보·지식 격차 해소에 기여
-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EBS중학 프리미엄 강좌 지원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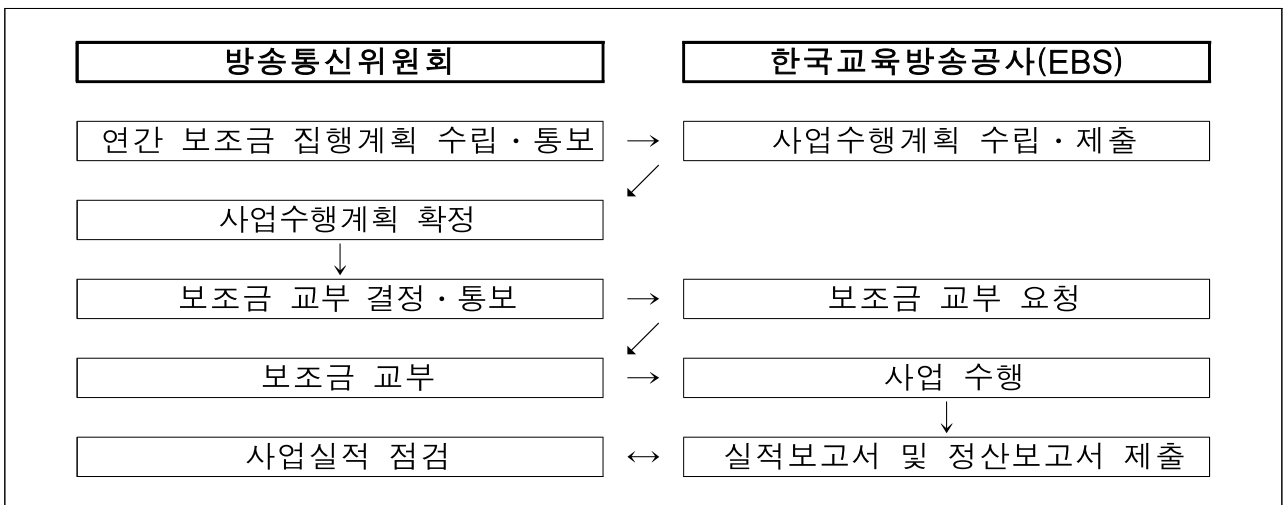
- '00. 1월,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
- '00. 6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작
 - 법률상 가장 기본적인 운영재원(방송제작 및 송출 등) 지원
- '05. 1월, 영역별 프로그램 제작지원
 - 유아·어린이, 청소년, 교양문화, 학교교과, 평생교육 등
- '14. 1월, 라디오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작비(2억원) 신규 반영
- '15. 1월, 초중학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비(20억원) 신규 반영
- '16. 1월, 2TV 프로그램 제작비(20억원) 신규 반영
- '19. 1월, 동남아언어교육프로그램 제작비(5억원) 신규반영
- '21. 1월, VR·AR콘텐츠(13.6억), 부모교육(9.6억), 장애아동교육(1.8억) 신규반영
- '22. 1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10억),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37억) 신규반영
- '22. 8월, 보조사업연장평가 조치요구사항 반영하여 내역사업 단순화
 - ※ '22년 기준, 소외계층(705백만원), 중장년(3,700백만원), 문화예술(1,000백만원)을 “평생교육”으로 이관, 초중학안전(480백만원)을 “2TV”로 이관
- '22. 12월,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56.5억) 신규반영
 - ※ '22.11월, 국민의 힘 정책위 2023년 예산 심사방향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중심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 발표
- '23.7월,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사업 수혜자 : 방송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교육방송공사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 24조(보조금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보조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아리랑 국제방송지원	23,675	23,423	23,423	13,430	13,430	△9,993	△42.7

4. 사업목적

- (TV프로그램제작)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최신 한국정보(뉴스·시사),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의 소식들과 한류로 대표되는 관광·음식·문화예술·공연, 중소벤처창업 기업의 해외 홍보 등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 글로벌 방송콘텐츠 재제작(번역,자막,더빙) 및 다언어 방송
- (영어FM프로그램제작)
 - 영어FM 라디오방송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및 방한 외국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공익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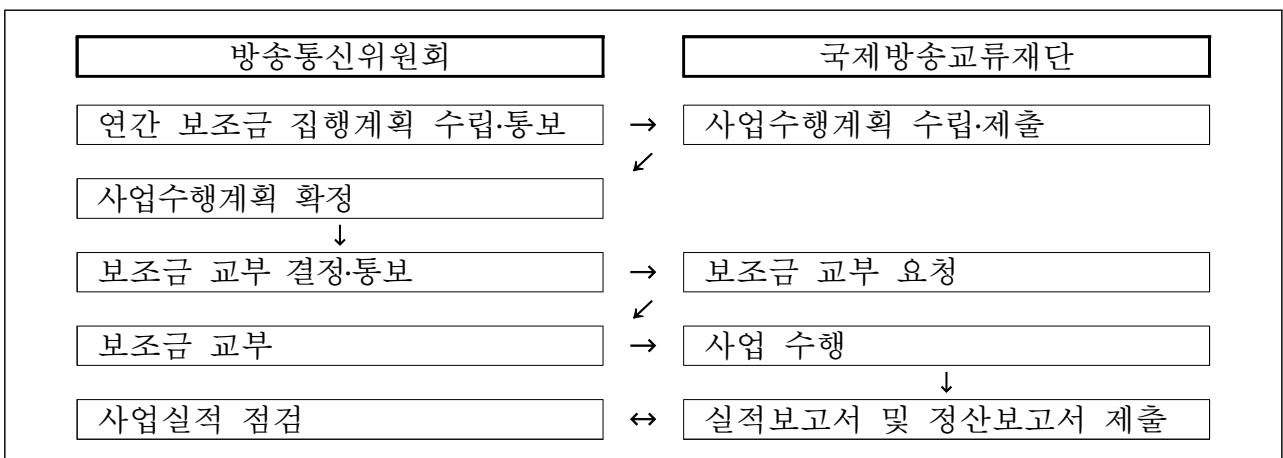
- 추진경위
 -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96, 공보처)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2003년 제주에서 영어FM방송을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 사업 수혜자 : 아리랑TV 시청자 및 제주 영어FM 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방송 교류재단	정액보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 국악방송지원 (31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국악방송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악방송지원	6,470	6,456	6,456	5,842	5,842	△614	△9.5

4. 사업목적

- (정규프로그램 제작) 국악전문감상, 국악교육,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현대화 및 세계화 프로그램 등 정규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특집프로그램 제작) 공개음악회 및 특집 프로그램, 캠페인 등 특집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보이는라디오, 공연실황중계, 주간문화소식, 특집 다큐 등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저작권료 및 방송자료 제작, 국악자료 보급, 프로그램 홍보 등 프로그램 제작지원

- (한국 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국악의 세계적 위상제고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전문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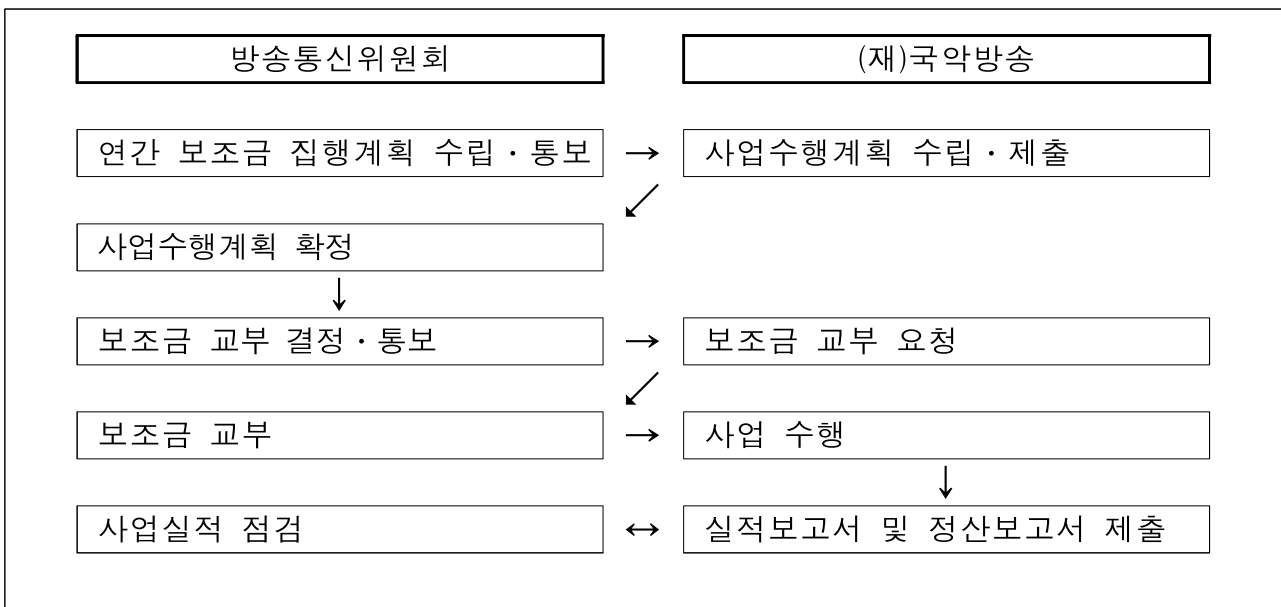
- 추진경위
 - 2000. 2.14. : 재단법인 국악방송 설립
 - 2001. 3. 2. : 국악FM방송 개국(서울·경기일원 방송)
 - 2001. 6. 1. : 남원중계소 개소(전북 남원일원 방송)
 - 2006. 7. 6. : 남도중계소 개소(전남 진도일원 방송)
 - 2010. 4. 7. : 경주중계소 개소(경북 포항·경주일원 방송)
 - 2011.10.27. : 전주중계소 개소(전북 전주일원 방송)
 - 2011.11. 8. : 부산중계소 개소(부산일원 방송)
 - 2012.12.14. : 강릉중계소 개소(강원 강릉 일원 방송)
 - 2012.12.30. : 대구중계소 개소(대구 일원 방송)
 - 2014. 3.26. : 광주국악방송 개국(광주 일원 방송)
 - 2015.12.29. : 제주국악방송 개국(제주 일원 방송)
 - 2015.12.29. : 서귀포국악방송 개국(서귀포 일원 방송)
 - 2017. 7.14. : 대전국악방송 개국(대전 일원, 세종 일부 방송)
 - 2019. 3.13. : 충주국악방송 개국(충주 일부)
 - 2019. 3.13. : 영동국악방송 개국(영동 일원 방송)
 - 2019.12.27. : 국악방송TV 개국(kt올레tv ch.25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국악방송
- 사업 수혜자 : 라디오 및 영상채널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국악방송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5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7,057	6,352	6,352	-	5,034	△1,318	△20.7

4. 사업목적

- 방송법 제54조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한민족)방송과 대외(국제)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회교육(한민족)방송 : 한민족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제고하여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매체로 기능
- 대외(국제)방송 :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정치·사회, 역사적 이슈를 11개 언어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채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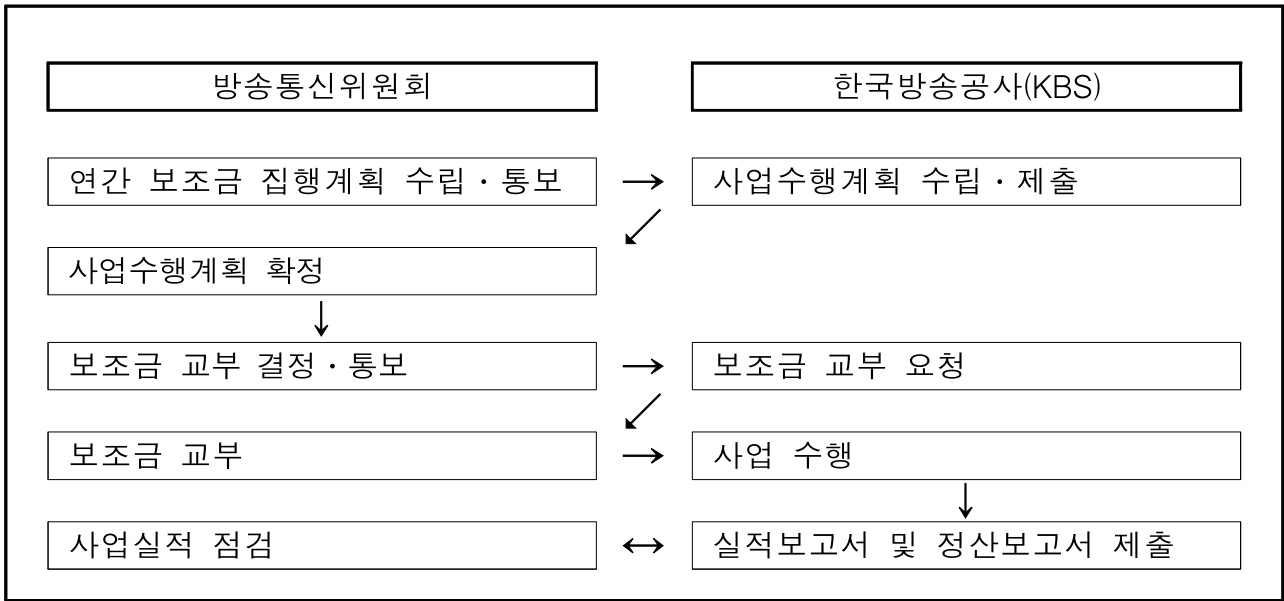
- '48. 8월, 국영방송으로 출범
- '73. 3월, 한국방송공사로 출범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
- '05. 12월, 국회 예결위, '06년 예산(안) 편성시 KBS 사회교육 및 대외방송 예산지원 결정
- '06. 1월, 2005년 국회예산 승인으로 최초로 정부 지원 받음
- '09. 12월, 국회 예결위, '10년 KBS 송신시설 교체비 예산지원 결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KBS)
- 사업 수혜자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한국 문화·경제 등에 관심있는 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공사	100	방송법 제54조 및 제6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4,530	4,530	4,530	4,530	-	-

4. 사업목적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제작지원) 동 내역사업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지역방송 경쟁력·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중소방송사를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및 콘텐츠 유통체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콘텐츠 마켓, 피칭포럼 참가 지원 및 번역, 자막 등 콘텐츠 재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지원) 동 내역사업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응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제2항 제6호, 제8호, 제4항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제1항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 제5의2호, 제6호, 제15호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12.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에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마련
- '12. 8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발의(국회 미방위)
- '14. 2월,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
 * 사업명 변경: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14년)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15년)
- '14. 6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국회 미방위)

- '14. 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 '15. 6월, '제1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17. 12월,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20. 12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5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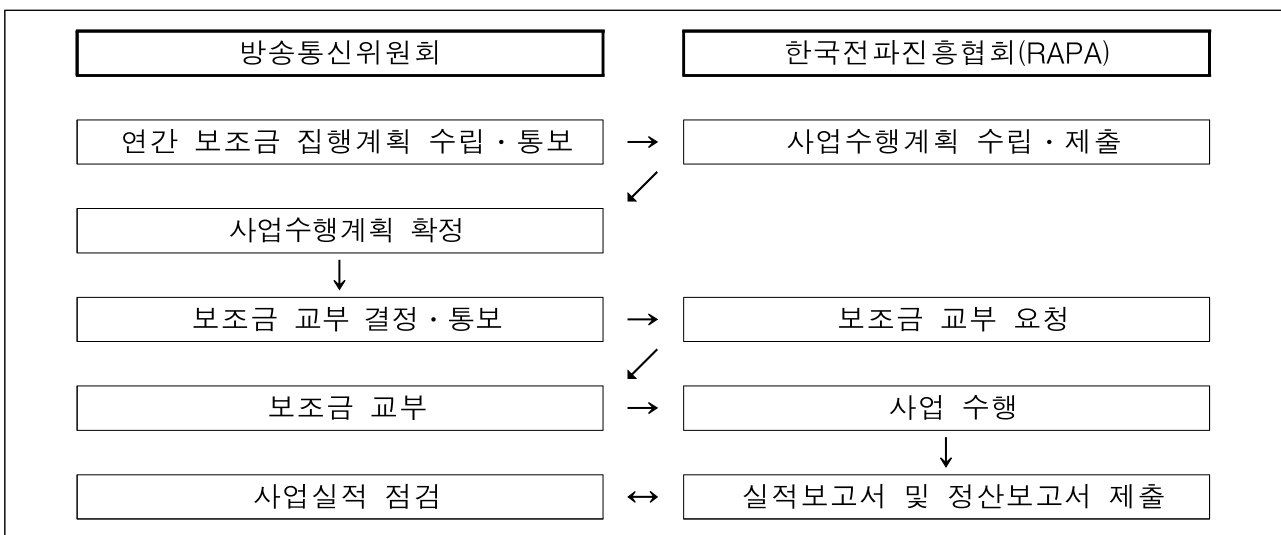
- : ①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②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③지역방송 공적책임 강화,
- ④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⑤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사 및 지역 시청·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전파진흥협회	100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 AM 라디오 송출 지원(3131-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2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AM 라디오 송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예산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AM 라디오 송출 지원	-	-	-	100	100	100	순증

4. 사업목적

- 전쟁·재난 상황 대응, 방송 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 공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방송에 대한 송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차질 없는 AM 방송 운영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 수혜자 : 라디오방송 청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전파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 미디어다양성 증진 (31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1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확보	미디어다양성 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미디어다양성 증진	3,490	3,990	3,990	3,290	3,290	△700	△17.5

4. 사업목적

- (미디어다양성 증진) 시청점유율 제한규제*(방송법 제69조의2)의 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 및 다양한 매체에 대한 TV시청기록을 조사하여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기반 구축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시청점유율 기초조사는 미디어 환경 다양화에 따른 시청행태를 파악하고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여, 향후 수행될 시청점유율 조사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패널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방송법 제69조의2)의 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
- *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방송시장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국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가 고정형TV 수상기를 통한 전통적 시청행위 뿐 아니라,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한 개인시청, 이동시청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시청행태를 반영한 시청기록을 조사하여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기반 구축
- (시청점유율조사 분석 및 검증 등) 시청점유율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연구 실시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의 방법론적, 통계적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9. 7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11~'23년, '1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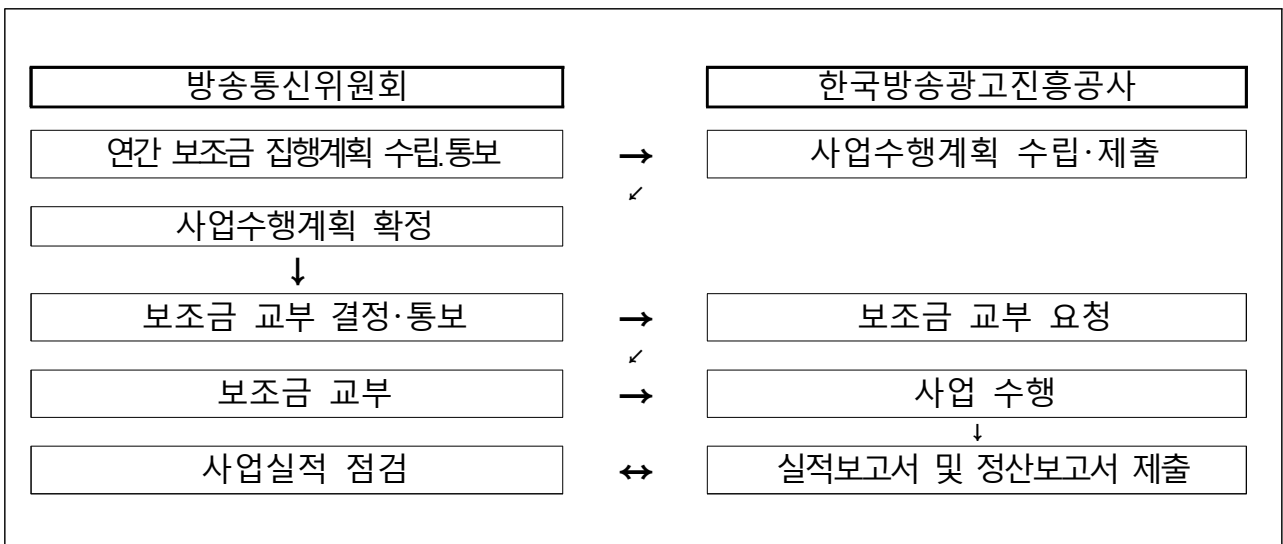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방송사업자, 광고주·광고대행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79	379	379	468	468	89	23.5

4. 사업목적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IPTV 포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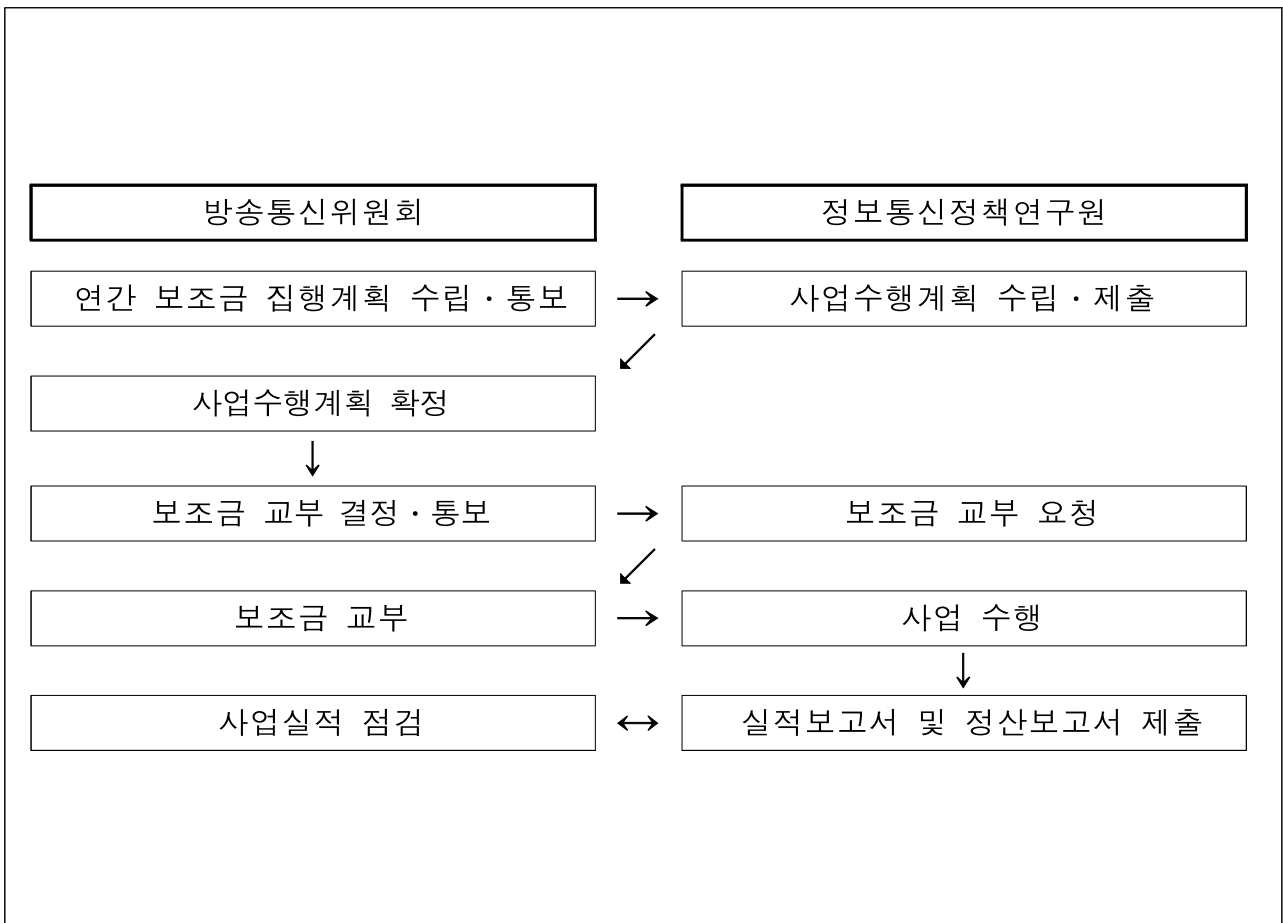
- '10.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근거 마련
- '10.~'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예비 연구 수행
 - ※ '10년 및 '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실시(정책연구 예산)
- '11. 7월 방송법 개정
 -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35조의5)
- '12.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시행
- '13.~'23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국회 보고(매년 3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방송사업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상황 조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촉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313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3,568	15,718	15,718	20,176	20,176	4,458	28.4

4. 사업목적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이용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 및 VOD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평가를 시행하며,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및 발달장애인 방송물 보급 지원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수어영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운영 등 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청각장애인의 신규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음성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음성인식 기반 자동 자막·수어시스템 단계별 개발에 따라 시범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등 미디어 접근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

-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국정과제 59.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강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플랫폼 고도화, 신기술 개발 등 추진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 축소(30%→25%) 및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체계 구축

○ 추진경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6년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실시
- '15~'17년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한 광역시·도 지자체 MOU 체결
- '20년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KT)
- '21년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누적보급률 100% 달성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SKB)
- '22년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LG U+)
- '23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260,378대 누적 보급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LG헬로비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06~'08년 지상파방송사 및 공익 PP 지원('06년 9사, '07년 22사, '08년 28사 지원)
- '08.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11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11.7월 방송법 개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11.12월)

- '20년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시범사업 시행(KBS·MBC·SBS)
- '21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3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EBS 추가)
- '22년 '2022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1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JTBC, TV조선 추가)
장애인방송 고시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7호, '22.12.20)
- '23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9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채널A, MBN 추가)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 '14.11월 지상파(KBS) 실험방송 실시 및 기술방식 검증
- '14.12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기술표준안 개발 완료
- '15. 4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송·수신정합 기술표준 제정
- '15.11~12월 유료방송 매체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실험방송 실시
- '16~'18년 참여사업자 확대 및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시범방송 실시
- '19. 7월~ 스마트 수어방송 본서비스 개시 및 서비스 운용·유지
※ 채널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 : SKB·LG헬로비전·KTSkylife
- '20. 12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기술표준 개정
※ UHD 방송 서비스 환경에서의 자막 방송 송수신 규격 추가
- '23. 12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기술표준 개정
※ 장애인 시청 편의 기능 요구사항 추가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 '18. 4월 국민 사업 제안 및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제안명)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용 방송수화, 자막 시스템 개발
(제안내용) 유료방송과 VOD, 인터넷 등 신규미디어에서 아직 자막, 수화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여, 최근 발전된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막 및 수화방송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개발 요구

- '18. 5월~ 예산안 요구 및 제안사업 논의(예산국민참여단 발족)
- '18. 8월 제안사업 선정 및 정부 예산안 반영
- '19. 1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착수
- '19.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1차 시제품 제작 완료
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환경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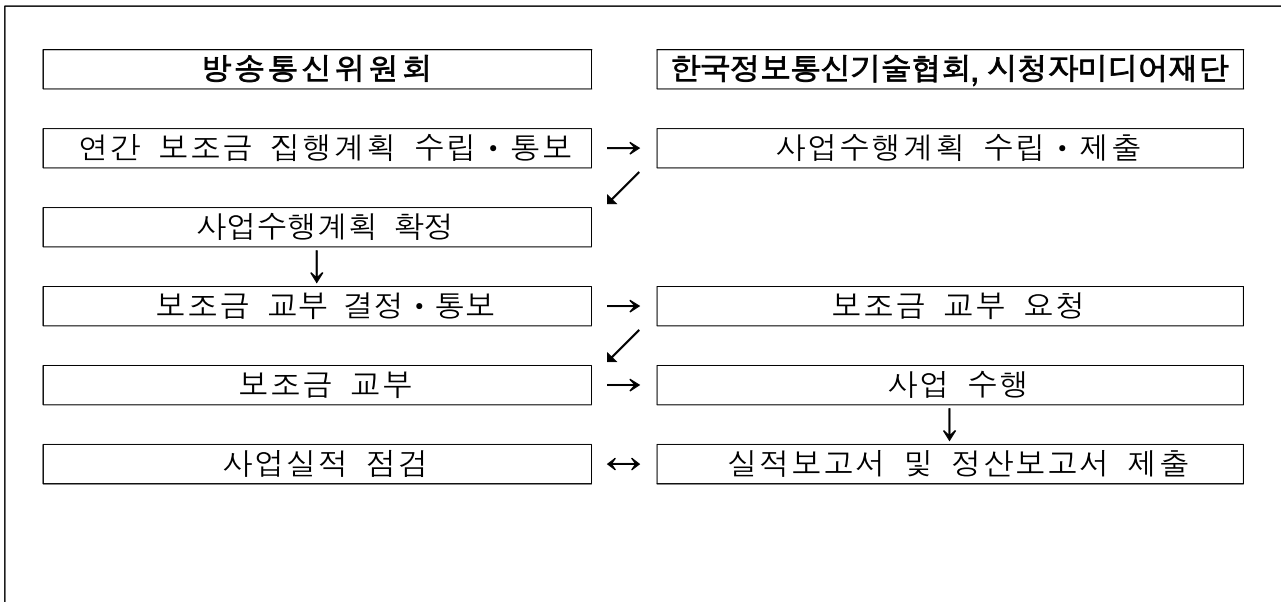
- '20.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2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1차 시제품 시범서비스 완료
- '21.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3차 시제품 제작 완료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수어번역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병렬말뭉치 제작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줌) 1차 시범서비스 추진
- '22.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4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수어 통합 앱 개발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제작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줌) 2차 시범서비스 추진
- '23.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5차 시제품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2차 시제품 제작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시제품 시범서비스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3132-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9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언론중재 위원회 지원	12,964	13,186	13,186	13,802	13,802	616	4.7

4. 사업목적

-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운용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법적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방송, IPTV, 포털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論評·廣告 그 밖에 選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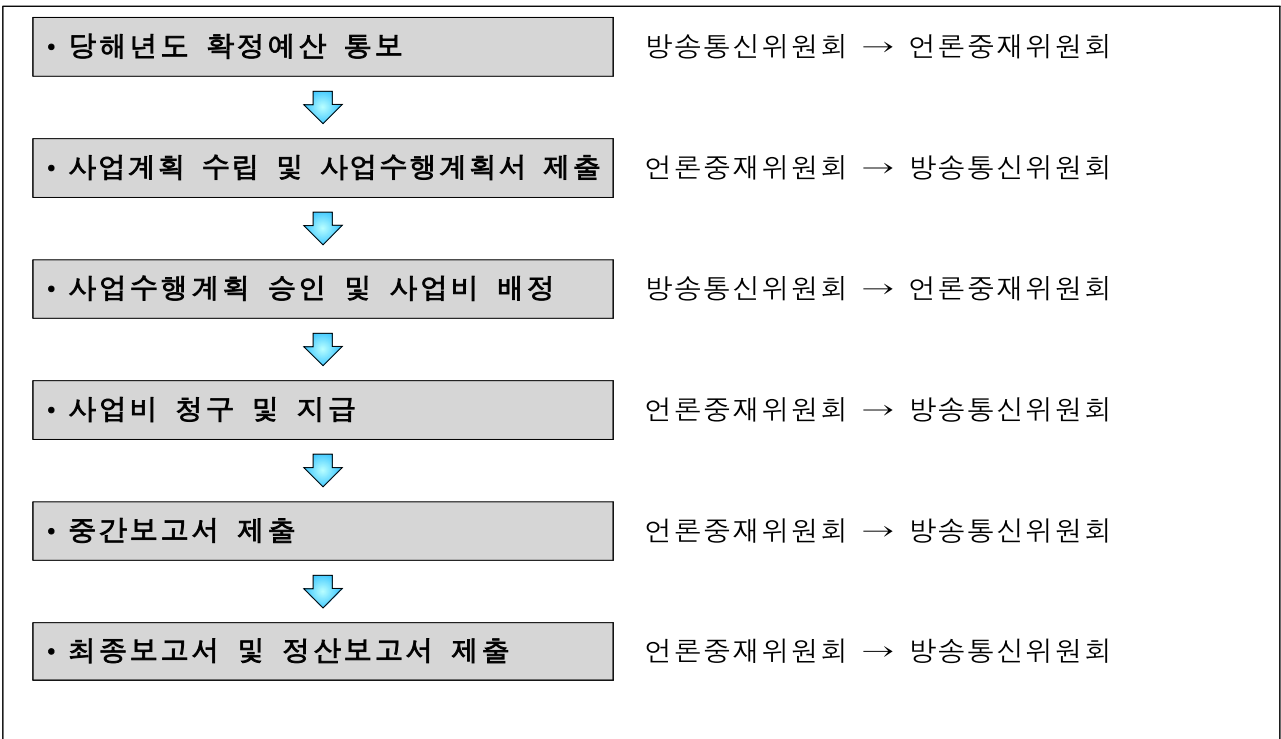
- '81. 3. 「언론기본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조정 및 심의업무 실시
- '87.1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근거법률 변경
- '0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05.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정 외 중재업무 실시
- '09.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 확대
 -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 '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언론중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당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10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 운영재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지원	35,835	36,824	36,824	34,613	36,560	△264	△0.7

4. 사업목적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8조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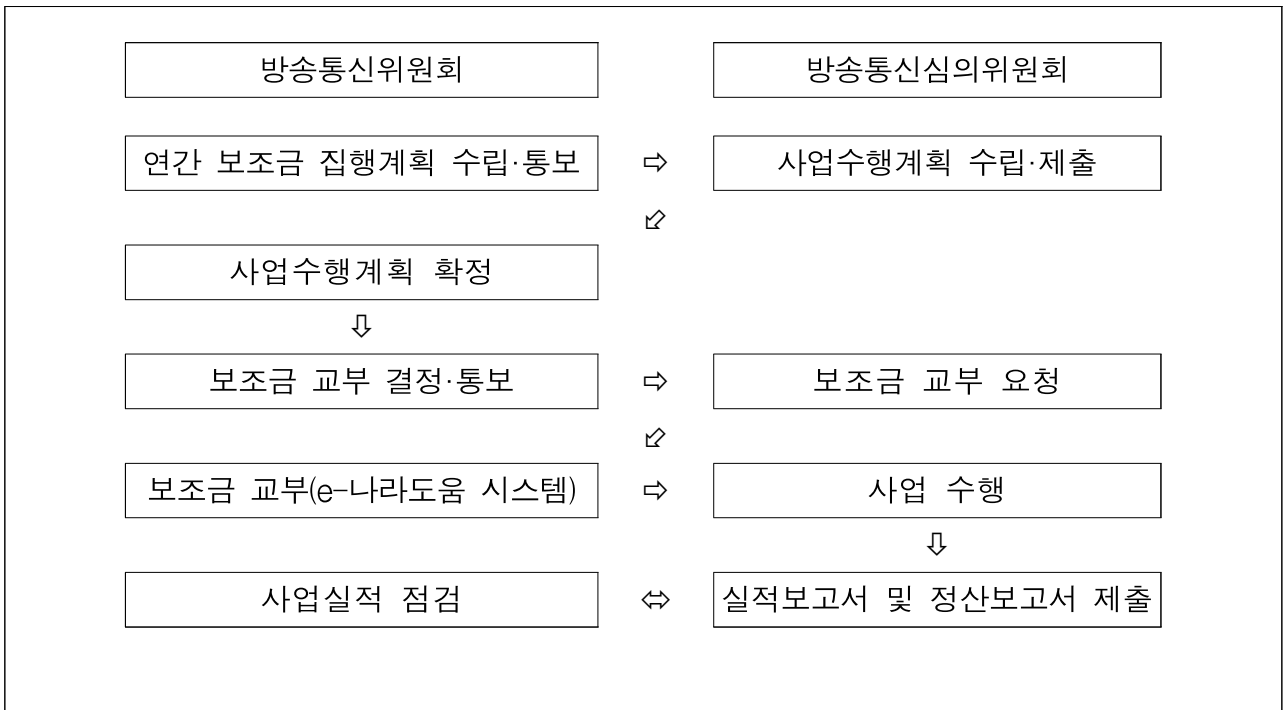
- '08.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08. 5.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출범
- '11. 5.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구성 및 출범
- '14. 6.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구성 및 출범
- '18. 1.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구성 및 출범
- '21. 8.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구성 및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313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1,708	1,743	1,743	1,770	1,770	27	1.5

4. 사업목적

-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제74조(협찬고지)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 제60조(협찬고지),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 추진경위

- '05. 5.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세분화(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등)
- '09. 5.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업무 중앙전파관리소 위임(13명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원)
- '10. 1. 방송광고 유형에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를 추가
- '10. 10. 방송광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관소에 위임
- '13.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관소 위임을 위탁으로 변경
- '14. 1.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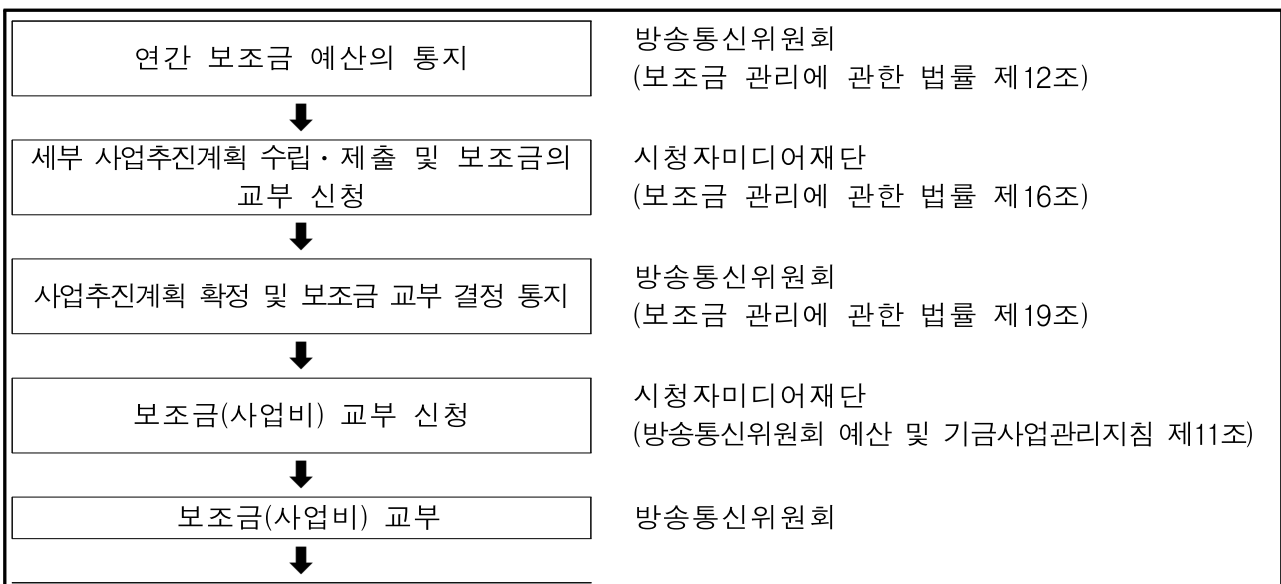
- '14. 11.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
- '15. 5.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법 시행에 따라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이관
- '15. 9.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상광고 고시 제정
- '16. 3.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16. 5.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법규 준수 여부 조사 실시
- '18. 10.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1. 4. 방송법 시행령 개정
- '21. 9.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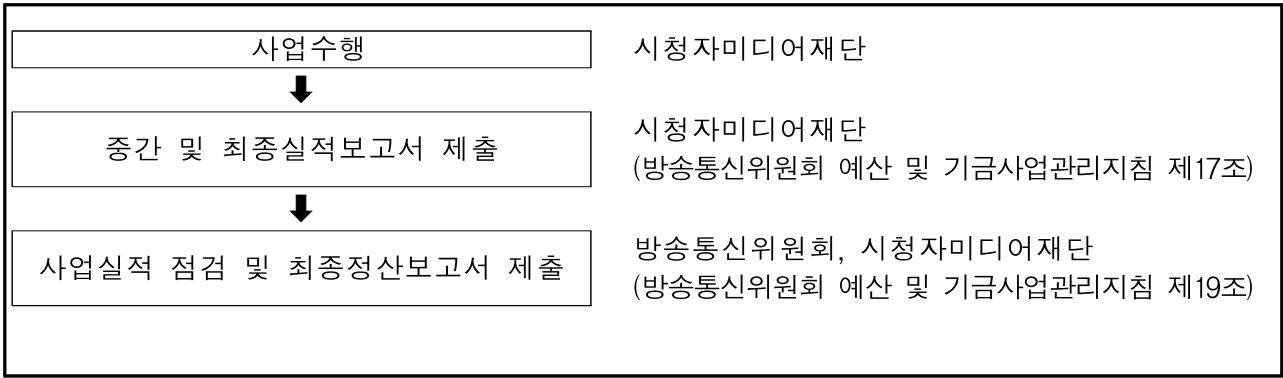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3)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3132-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시장조사심의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610	629	629	632	632	3	0.5

4. 사업목적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방송법 등의 금지행위 제도* 시행에 따라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 구축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등

-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널 및 방송광고, 방송편성 계약 등의 거래실태와 불공정행위 발생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주요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전 분기 민원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위반 의심사례 등을 분석하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자 자율개선을 유도하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지원을 통해 시장행태 개선

* IPTV 3개사, MSO 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9개사(개별SO 9개사 제외)

-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의 회계자료 검증을 통한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8.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시장에 대한 감시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자료 검토·분석 업무 강화
- '08. 4월, IPTV 및 IPTV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1월, 유료방송사업자 및 PP 등에 대한 방송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방송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 광고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 6월,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12. 7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3.12월, 유료방송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14. 1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
- '14.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
- '14.10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5. 3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
- '15.12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 '16.12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관련 시정조치
- '17. 9월,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17.11월,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
- '17.12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18.10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시정조치
- '18.12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체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19.10월,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지급 관련 시정조치
- '20. 6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거래조건 차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21. 2월, 유료방송사-PP 간 투명한 광고계약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권고
- '22. 2월·11월, 보험상담방송의 시청자정보 부당제공을 통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22. 6월, 유료방송사업자의 과다위약금 부과를 통한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 '22. 12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실시를 통한 행정지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중소방송 등 방송통신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세부 연구수행방안 수립 및 협약체결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사업수행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방송법 제85조의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상 금지행위 조항) 등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		
사업결과물의 정책 참고자료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방송법 제85조의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이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항) 등
↓		
사업결과 정산 및 차년도 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사 업 명
(14)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13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300	300	300	0	-

4. 사업목적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물의 인정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지원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PP 등) 대상으로 매년 외주제작 거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외주제작 거래 및 불공정 관행 파악('19년부터)
-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외주계약 체결 준수를 위한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이행점검(상·하반기 2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8조 제5항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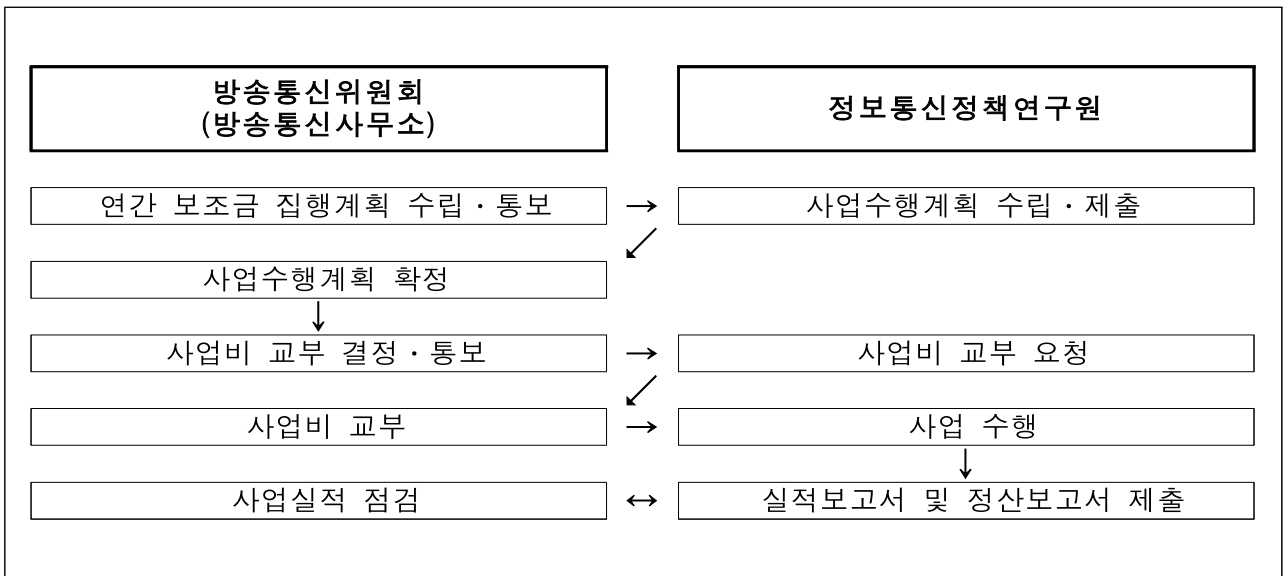
- '91년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 '12년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도입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반기별)
- '17. 8. 22. : VIP,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지시
- '17. 8 ~ 11월 :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점검 실시
- '17. 12. 19.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 '19. 7. 17.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19년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1회) 실시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연2회, 상·하반기) 점검
- '21. 12월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사항 개선
- '22. 7. 17. : 가이드라인 일몰도래에 따른 재검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 확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1,740	610	-	1,027	1,027	417	68.4

4. 사업목적

- (팩트체크 활성화)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 및 관련 기반 확충
-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미디어 환경 및 기술 발전 추세에 대응하는 생애단계별 정보 판별 역량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련 정책·제도 등 조사 실시
-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OECD 허위조작정보 연구허브 신설에 따른 기여금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 및 허위정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및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운영원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여,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 추진경위

-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8년)
 - 인터넷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제시되었고, 관련 시스템 및 기술이 개발될 필요성 제안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19년)
 - 플랫폼사업자·시민·언론·정부 등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하여 발표, 발표 내용 중 정부에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성 제안
- 국무회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경계의 대상' ('19.8월)
 -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
-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추진 요청('19.12월)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구성원 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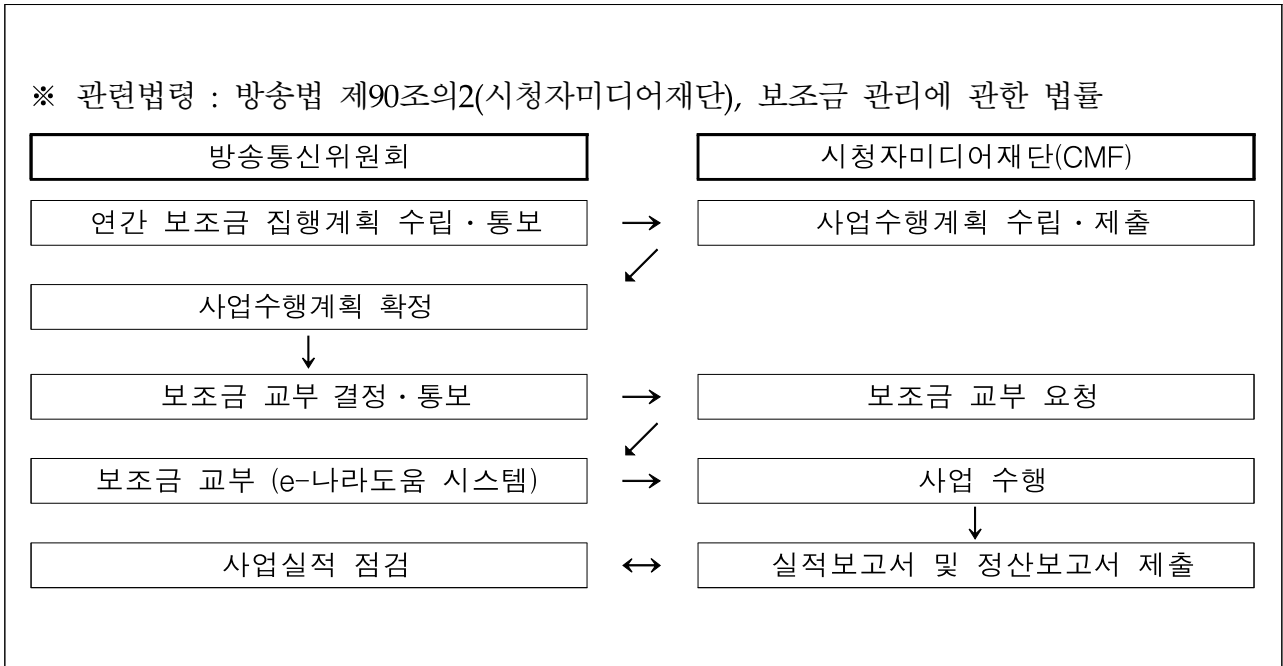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16)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3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4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응자	국고보조율(%)	응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1,368	1,368	1,368	1,468	1,468	100	7.3

4. 사업목적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공익성 강화 유도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방송비평 활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89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및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지원

<지상파방송 지원>

- 2001 : KBS의 경우 방송법 제69조제7항에 의해 매월 100분 이상 편성 의무화 사업자로 '01년부터 제작 지원
- 2005 : 지역 지상파방송사로 지원 확대
- 2011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체라디오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 2002 : 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채택료 및 제작비를 직접지원
- 2003 : 방송법 제70조제7항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시작
- 2009 :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통하여 시민방송을 포함한 일자리방송 등 6개 PP를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지원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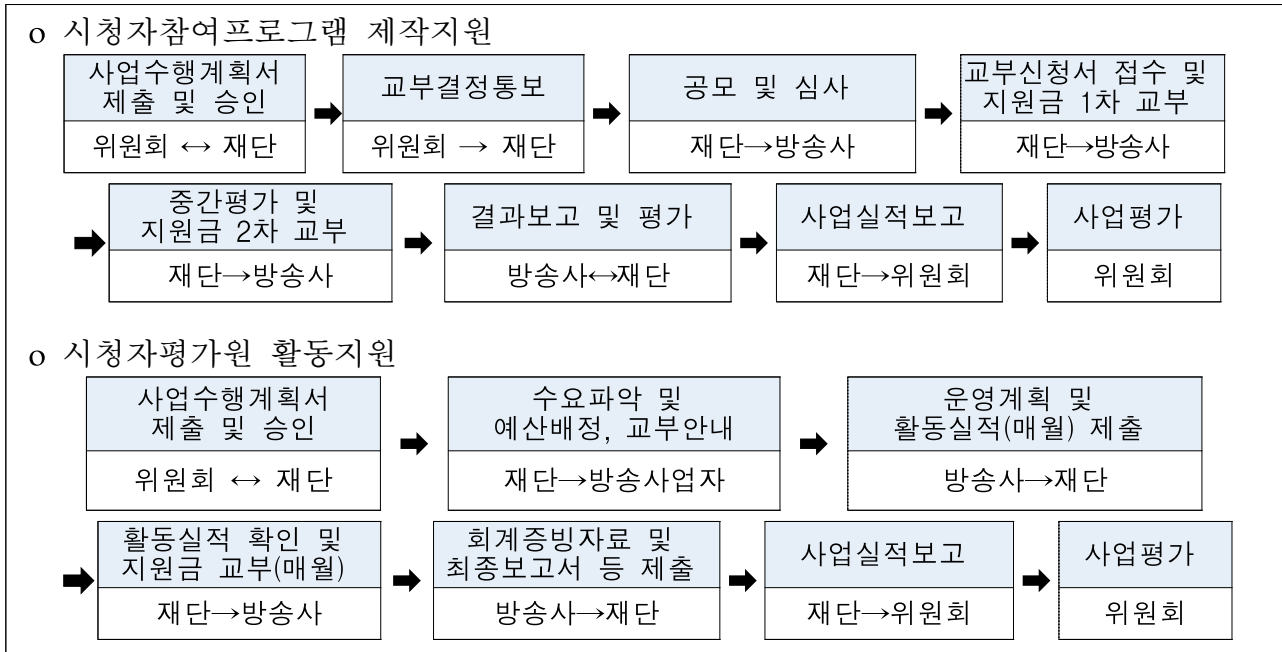
- 2000 : 방송법 제정(2000.1) 이후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시청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청자 및 시청자평가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31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25,568	25,284	25,284	21,665	21,665	△3,619	△14.3

4. 사업목적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
-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 진입에 따라 유아, 노인·장애인 등 누구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방송서비스의 다변화로 시청자의 서비스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권익침해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시청자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송서비스 이용 지원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지역적 격차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제공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미디어교육 접근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국정과제 (59.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input type="checkbox"/> 실천과제 ○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참여 인프라 확보) 지역민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 나눔버스) 확대로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허브 육성

- 사업경과

- '05년 11월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6년 1월 :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통한 미디어교육 체계화 모색
- '07년 6월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9년 1월 : 미디어센터운영 및 시청자지원 사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 운영/관리
- '12년 1월 :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사업 시행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통합)
- '14년 7월 : 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4년 8월 :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5년 5월 :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 설립
- '15년 6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6년 2월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16년 11월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9년 11월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년 12월 : 충북·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3년 12월 : 경남·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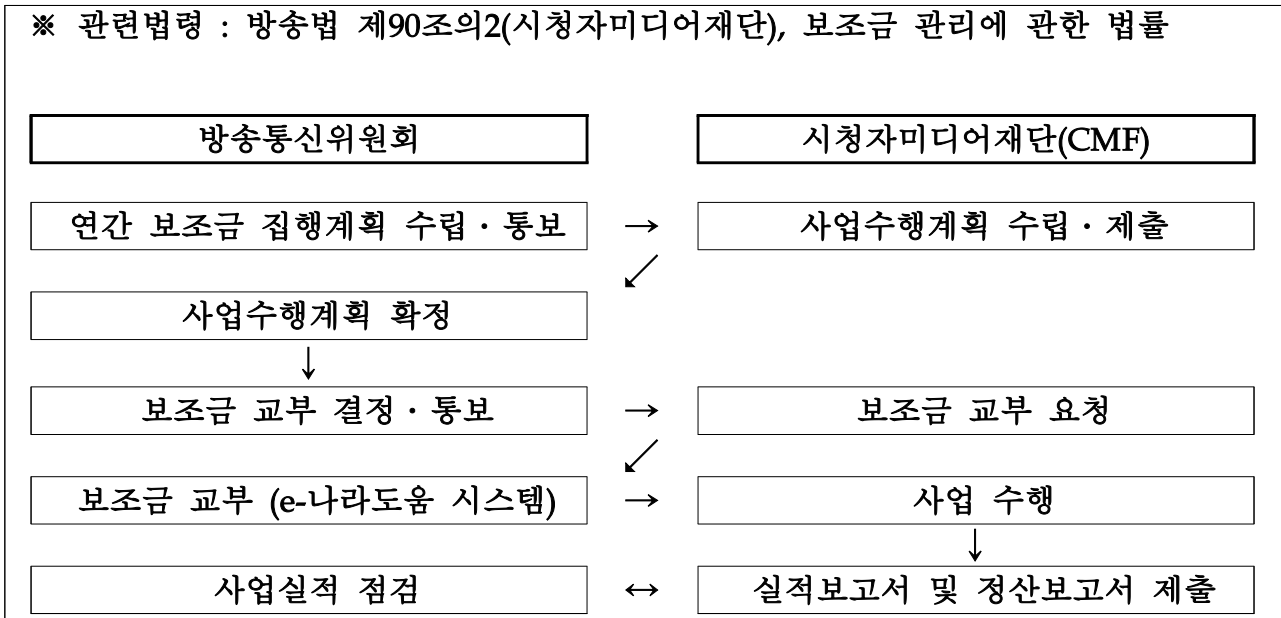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7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7·8·10호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18)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31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1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310	310	310	310	310	-	-

4.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 (방송대상 시상금) 방송대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특별상 등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
- (방송대상 시상운영비) 예·본심 심사위원회 운영 및 방송대상 행사 위탁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

제8조(방송기반국)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 추진경위

- '96년 방송위원회 대상 제정 및 시상

- '00년 舊 방송위원회가 방송제작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방송위원회 대상' 자체 수행

- '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송위원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으로 변경

- '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

- '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최우수상(총리상)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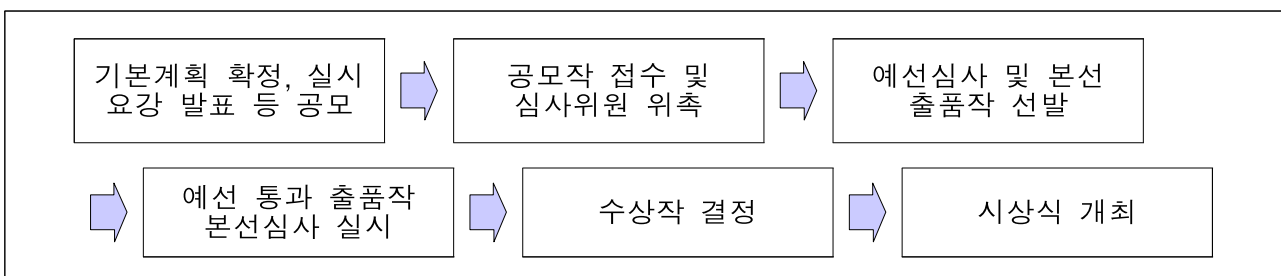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9) 방송평가 기반조성 (31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평가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평가 기반조성	799	829	829	871	871	42	5.1

4. 사업목적

- (방송평가기반조성)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청자 만족도 및 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을 통해 방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적 책임을 확보
-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을 평가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만족도와 채널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유도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방송콘텐츠사업자 경쟁력 평가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및 사업자의 방송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공적재원 투입 등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적역할을 강화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 변화를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
-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방송사업자의 편성실태, 방송편성규제의 산업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성정책 개선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평가항목 및 척도)

1. 지상파방송사업자(TV)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40점/700점 만점)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30점/600점 만점)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08.10.14.)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표·지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00. 방송법 제정 시 방송평가 근거조항 제31조 신설
- '01. 8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08.10월 방송평가 결과 공개 시작
- '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중편PP) 평가대상 추가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 '03.~'04. 방송평가에 시청자의 질적 만족수준 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실시
- '05. 4월 KI 시청자 평가지수 사전 조사 실시
- '06.~ 매년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및 방송평가에 반영
- '12.~ 종합편성채널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추가 및 방송평가에 반영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 '11.11월 「콘텐츠 경쟁력 평가 방안」 선행 연구 수행
- '12.~ '방송평가기반조성' 내역사업으로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사업 수행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00.10월 「TV 시청행태 연구」로 제1회 조사 실시
- '08.10월 정부승인통계 인증(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 '09. 6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명칭 변경
- '09. ~ 매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실시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08. (舊)방송위에서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다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에서 규제별 편성현황 정리 및 발간
- '13.~ 일관된 사업형태의 진행이 필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현행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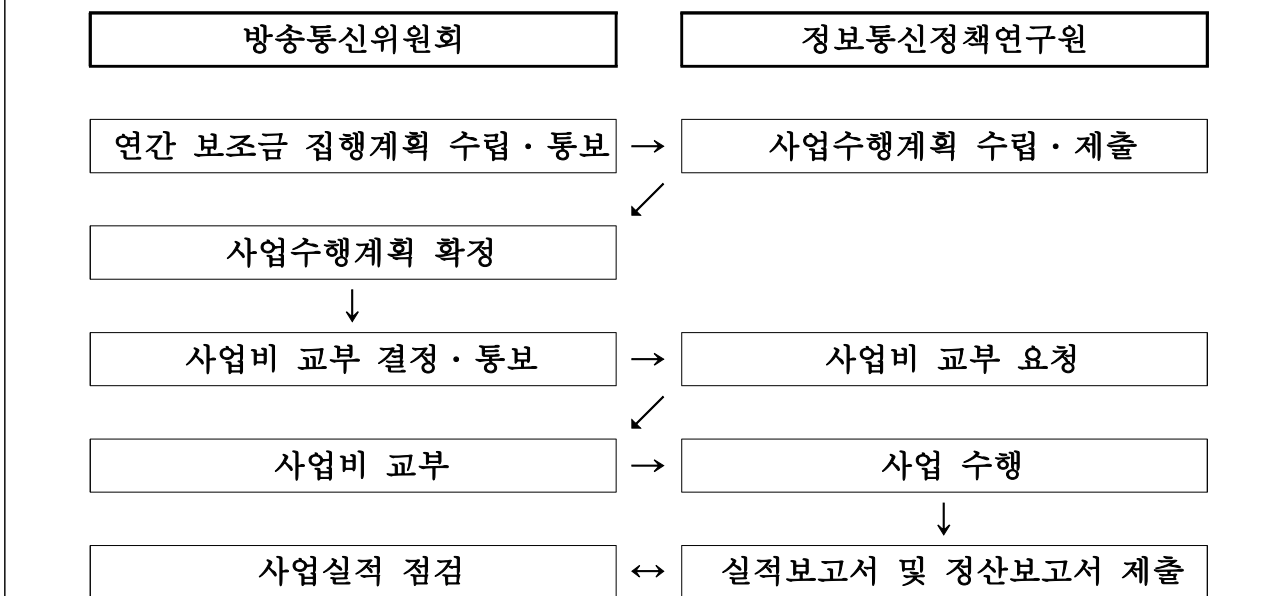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및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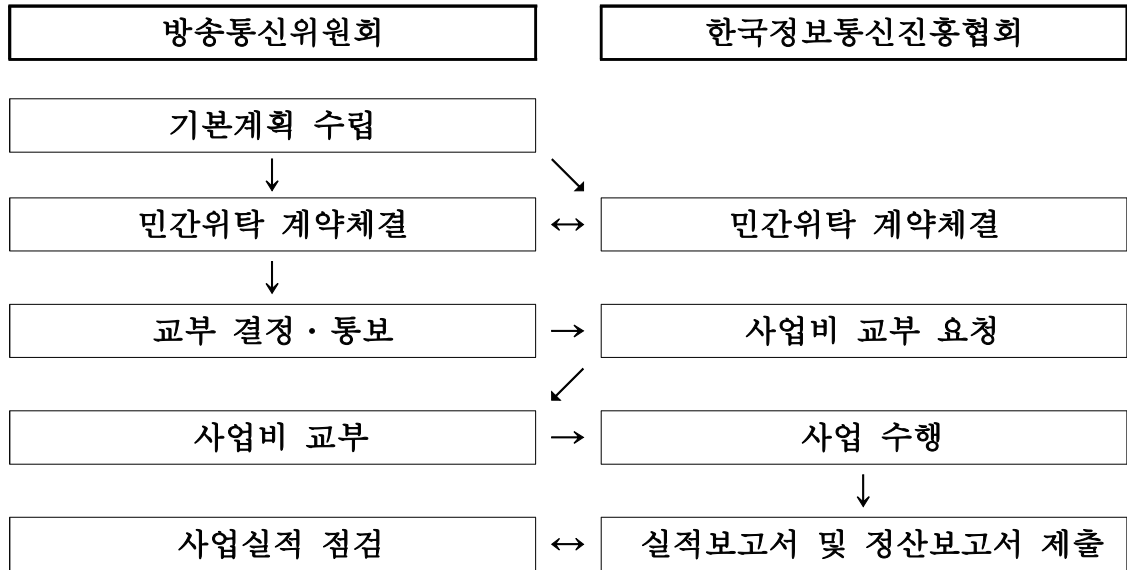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평가항목 및 척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 계획의 수립),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표·지수개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1조 (통계의 작성·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7. 사업 집행절차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 평가,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민간경상)]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민간위탁)]



사 업 명
(20)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313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지원	2,569	2,449	2,449	2,449	2,449	0	-

4. 사업목적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을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추진경위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 '81.1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구성 및 공익광고 첫 방영
- '83. 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로 개편
- '88. 7.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공익광고협의회로 개편
- '00. 1. 방송법 73조제4항,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제정
- '14. 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익광고 제작 사업 지원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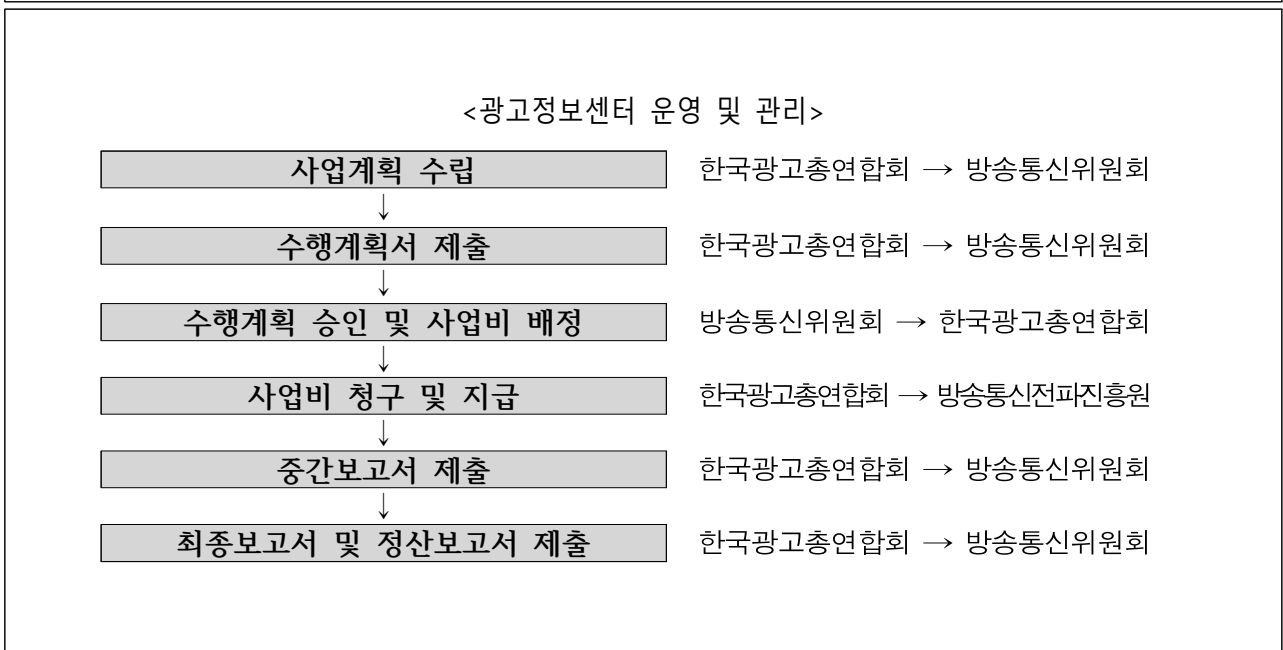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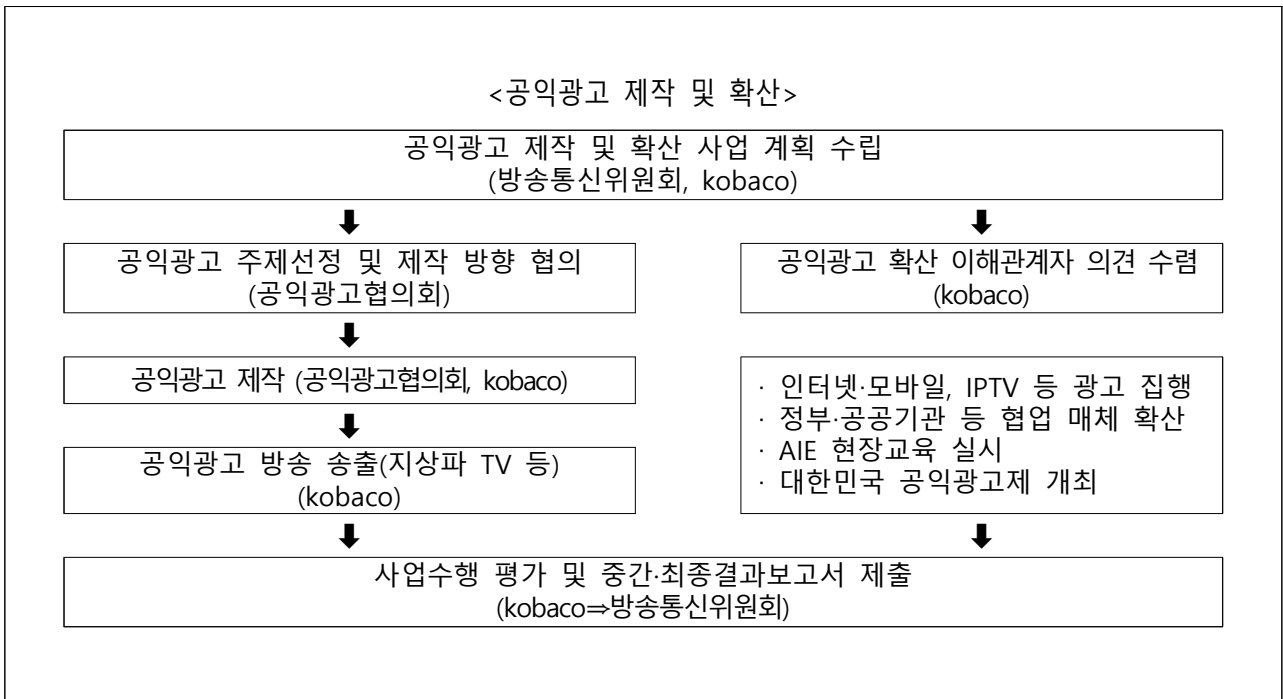
- '97. 8. 정부, 광고정보센터 구축 계획 확정
- '98.11. 광고정보센터 인터넷 서비스 개시 및 방송광고자료 DB화
- '99. 6. 광고정보센터 방문자 서비스 개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고총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광고계 및 학계, 방송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등
한국광고총연합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3134-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15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1,591	1,591	1,591	2,356	2,356	765	48.1

4.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우수 그린비즈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aT센터 지원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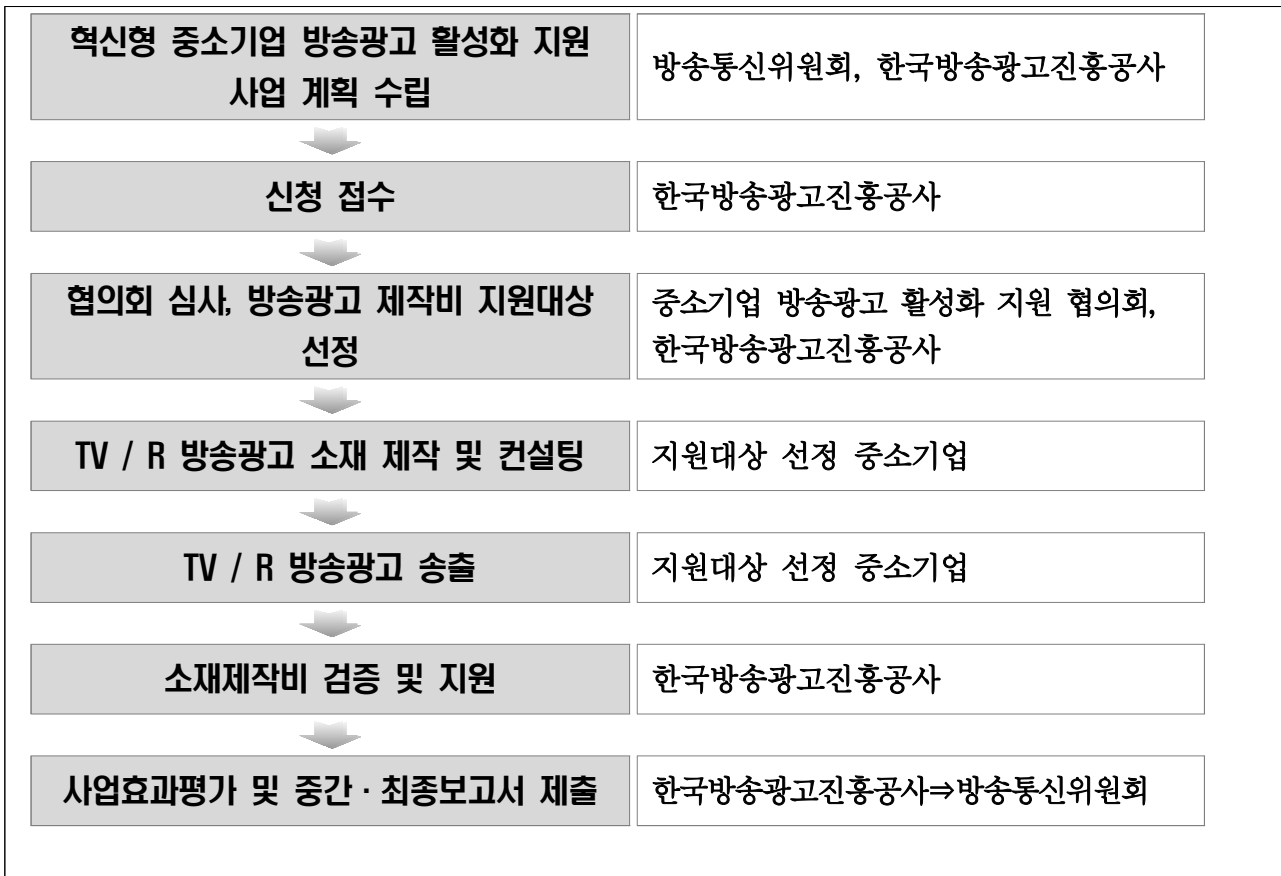
- 혁신형 중소기업(구 벤처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98.7)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15.1)
-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제작비 추가 지원('16.1)
- 정부기관, 지자체 등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우대('18.1)
- 예비사회적 기업 제작비 추가 지원('20.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기업 추가 지원('20.4)
- 수도권 외 소재 기업 우대('21.1)
- 지역혁신선도기업, 그린뉴딜우수기업 추가 지원('22.1)
-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추가 지원('22.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추가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23.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사,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2)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3134-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17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504	454	454	202	202	△252	△55.5

4.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편성 및 광고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 제고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각종 방송통계 조사결과를 표준화하고, 중요 통계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방송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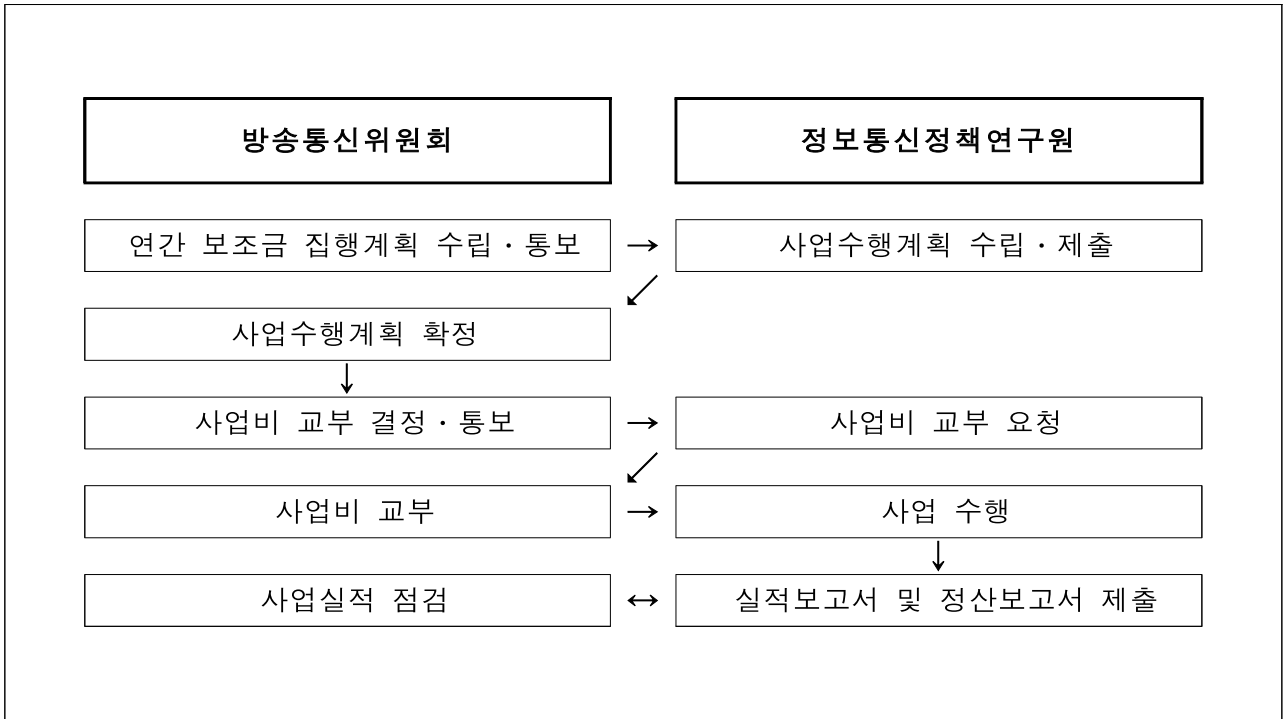
- '16. 5월 방송분야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 정책연구 실시
- '18. 1월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서비스 개시
- '19. 1~12월 2019년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 '20. 12월 방송통계포털 서비스 전면 개편
- '21. ~ 매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3)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3134-3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4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2,132	2,132	2,132	2,868	2,868	736	34.5

4. 사업목적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자금 및 정보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9호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 제6호

제29조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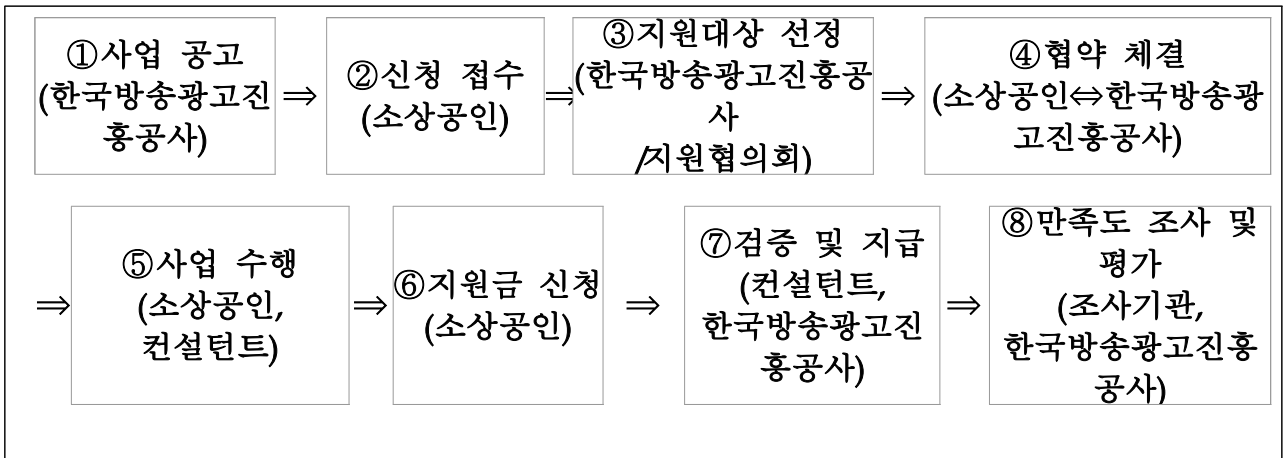
- '20. 1 ~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신규 도입
- '22. 1 ~ : 지원대상 확대(136사→177사) 및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가점 부여
- '23. 1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대상 가점 부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지역 방송사업자, 지역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4) OTT산업 경쟁력 강화 (3134-3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4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OTT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OTT산업 경쟁력 강화	350	600	600	600	600	-	-

4. 사업목적

- (OTT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OTT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시장·이용행태 등 조사를 통하여 국내 OTT 산업 활성화에 기여
- (OTT 해외진출 지원)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OTT 포럼 개최, OTT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및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
 -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제6호, 제11호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 제6호
 - 제29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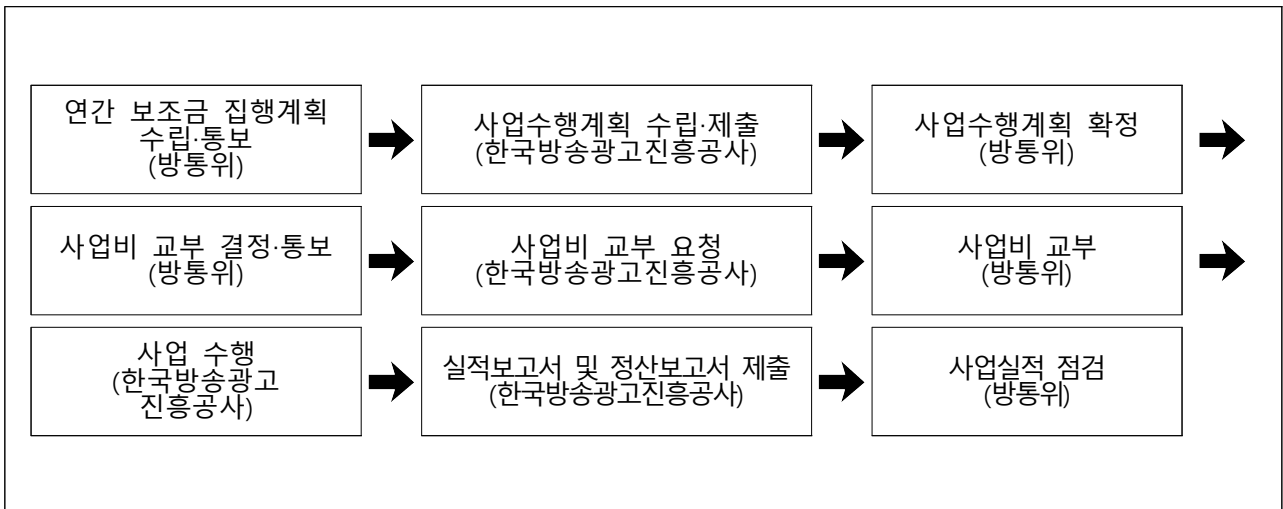
-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발표('20.6월)
 - 미디어·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과제31 협업형 해외진출 확대(OTT 해외진출 지원)
- 국정과제 27(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22.5월)
 - 27-3(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조성 및 전략 수립)
 - ※ (OTT 국제행사) OTT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 국제 OTT 포럼 개최('22.11.16.)
 - 국·내외 OTT 사업자, 정부, 학계 전문가 등 190여 명 참석
- 해외 OTT 시장조사(중국, 멕시코, 브라질) 및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결과보고서 발간('22.12)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23.2.2)
 - 정책목표 ①-③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국제 OTT 포럼 개최('23.11.16.)
 - 국·내외 OTT 사업자, 정부, 학계 전문가 등 400여 명 참석
- 해외 OTT 시장조사(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UAE) 및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결과보고서 발간('23.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OTT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일반국민(OTT이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31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283	2,300	2,300	2,500	2,400	100	4.3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통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게 위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 공유 기반 확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08년 :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시행
 - '13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연구 사업을 (신)방통위와 미래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분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학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과제 신청 및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실국별 과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핵심과제 위주로 추진
↓		
② 연구과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과제의 적합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활용목적의 명확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		
③ 수행기관 공모	방송통신위원회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및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행기관 공모 실시
↓		
④ 연구자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결과 입찰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⑤ 계약 체결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담당관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		
↓	⑥ 연구 진행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수행기관에서 연구 진행
↓	⑦ 중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담당관이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심의
↓	⑧ 연구결과(연구보고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과제담당관이 그 결과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
↓	⑨ 연구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연구목표의 달성도, 결과의 활용성, 연구의 질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외부 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
↓	⑩ 활용상황 점검 및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활용상황을 보고

사 업 명
(26)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31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2,576	2,356	2,356	2,148	2,148	△208	△8.8

4. 사업목적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방송통신 규제 분야 고위급 면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와 규제 분야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한 정부 지원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방송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디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의 신규 통상 이슈 및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통상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대국민 통일의식 제고 추진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마련 및 학술연구 등에 자료로 활용하여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마련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정부와의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방송사업자 등 지원 정책 추진
 - FTA에 근거가 마련된 국가들과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국내 프로그램 인정, 제작지원, 인력·장비 출입국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해외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컨퍼런스 매년 개최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직접 제작비를 지원
 -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을 촉진 시키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3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건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협상 대표단) ① 위원장은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 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①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점진적 자유화의 과정은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의 일반적수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매 협상마다 진전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 교류협력의 지원)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추진경위

<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지원 >

- 주요 협력국 정부 및 해외 방송통신 국제기구·유관기관을 방문(2014년 8회, 2015년 15회, 2016년 19회, 2017년 19회, 2018년 20회, 2019년 21회)하여 국제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방송통신 제도·정책 조사(계속)
- 한·불 간 방송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와 MoU 체결('16.6.2.) 및 국내 방송사의 프랑스 진출 지원을 위해 韓)KBS - 佛)TV5 Monde, 韓)YTN - 佛)France 24 MoU 체결 지원('16.6.2.)
- 한·EU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및 신속한 적정성 평가 진행 유도('17.11.20)
-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및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등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관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18.2.26~3.4.)
- 체코 통신위원회(CTU), 터키 문화관광부(MOC),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및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등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및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등 논의('19.3.1, 3.14, 3.28, 12.4)
- 싱가포르('21.10.29.), 인도('21.11.2.), 베트남('21.12.14.) 등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실시
-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와 OTT 규제 관련 정책 등 논의('22.8.29.)
- 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APT) 사무총장과 불법 스팸대응 및 통신 분야 협력 등 논의('23.2.22.)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디지털 규제 방향 및 이용자 보호 등 논의('23.4.3.)

< 국제 회의 참석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 방송통신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지역 협력 증진 논의 (2014.7.21.~22., 2015.8.24.~25. 2016.5.12.~13.)
-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에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정부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미디어 규제 정책 관련 의제 발제('18.5.9.~5.13. '19.6.12.~13.)
- 방송콘텐츠 국제마켓(MIPCOM) 주빈국 행사를 개최하여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해외 국가 간 방송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한류 확산에 기여('20.10.12~16)
- AIBD 총회('21.12.9.) 참석 등 비대면 방식의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추진
- 2022년 AIBD 전략기획위원회 4회(2월, 8월, 9월, 11월)·Asia Media Summit (5월)·AIBD 연차총회(8월) 참석 및 의제 대응, 한-AIBD 공동세미나 개최(12.1.~2.), AIBD 비상임 자문관 활동(AIBD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및 이행방안 발굴)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협력강화('23.1)
-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 및 AIBD 회원국의 방송 실무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5.20.~5.23.)

< 방송통신 분야 통상 협상 >

- 2017년 12월 한-중 FTA, 2018년 5월 한-메르코수르(남미4개국), 2019년 6월 한-러 FTA 등 협상 개시 선언
- 2019년 11월 한-중 FTA 6차 후속 협상, 2020년 5월/7월/10월 한-중 FTA 6차/7차/8차 후속 협상
- 2019년 1월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 착수에 합의, 제네바 총회의 7회 참여, '20.2월 이후 온라인 전체회의 진행 중
- 2020년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
- 2021년 4월 한-우즈베키스탄 STEP 협상 개시
- 2021년 6월 한-칠레 FTA 개선협상 디지털경제 분과 신설 및 개선협상 재개
- 2021년 6월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재개
- 2021년 CPTPP, DEPA 후속가입 검토
- 2021년 10월 한-UAE CEPA 협상 추진 합의 공동선언
- 2021년 12월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타결
- 2021년 WTO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 규범 논의 지속
- 2022년 한-GCC FTA 협상 재개, 3월/6월/10월에 4차/5차/6차 협상
- 2022년 DEPA 제1차 가입협상 개시 및 1-5월에 1-4차 가입협상
- 2022년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재개, 7월/9-10월/11월에 6차/7차/8차 협상
- 2022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관련 선언문 등 논의 지속, 12월에 1차 협상
- 2023년 IPEF(미국 등 14개국)2-4차, DEPA(싱·칠·뉴), 한-GCC(사우디 등 6개국) 등 他국가와 협상 중인 통상이슈 대응

< 방송콘텐츠 진출 시장 다각화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간 방송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부대행사 개최 (1차 : 2014.12.11.~12, 2차 : 2015.8.24.~25.)
 - 한국과 아세안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호교류를 주선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주관 국제 전시회인 'KL Converge'에서 한국관 운영(15.8.27~29.)
 - 동남아 한류 확산 및 EBS의 베트남 교육방송모델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교육 방송(VTV7) 개국식 참석(16.1.8.) 및 정보미디어부(MIC)와 MoU 체결(16.5.25.)
 -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반 운영 기반 마련(17.2.20~23)
 - OIC 방송규제기관 포럼(IBRAF)*에 참석 콘텐츠 교류와 글로벌 화합에 대해 발제하는 등 이슬람권으로의 한류 방송 콘텐츠 진출 기반 마련(17.2.22)
- * IBRAF(Islamic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Forum) : 디지털화와 융합을 배경으로 이슬람 국가 방송 규제 당국간의 협력 증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럼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 >

- 2001년 6월 구 방송위원회가 특별기구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남북 방송교류 협력 추진
- 2005년 8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법정기구로 격상
- 2011년 6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로 통신 분야 추가·개편
- 2013년 11월 국회 미방위 예산소위시, 사업 예산 반영 추진 필요 의견 제시
- 2015년 '2015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5.10.), KBS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슈퍼 코리아의 꿈' 제작지원 및 방영
- 2016년 '2016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KBS 명견만리,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작지원 및 방영
- 2017년 '2017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7.12.), EBS 지식채널e 남북관계를 주제로 UCC 공모전 실시 및 방영
- 2018년 '2018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8.11.), EBS 지식채널e '북한 언어 탐구생활' 등 10부작 제작 지원 및 방영
- 2019년 '2019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9.10.), 특별 다큐멘터리 3부작 '샘 해밍턴의 페이스북'(SBS), 특별라디오드라마 2부작 제작지원 및 방영, 「2019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19.12)
- 2020년 '2020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20.11.), '30&70 통일에 대한 밀레니얼 4인의 시선'(JTBC) TV프로그램 2부작 및 '남북언어탐구생활'(춘천 MBC 등)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방영, 「2020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0.12)

- 2021년 '2021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21.9.), '청년들의 페이스 북'(SBS) TV프로그램 2부작 및 '세상을 바꾸는 시간'(CBS) 라디오 프로그램 10부작 제작지원 및 방영, 「2021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1.12.)
- 2022년 '2022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22.10.6.), '나의 살던 고향은'(MBC) TV프로그램 2부작 제작지원 및 방영, '정관용의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WBS) 라디오 프로그램 10부작 제작지원 및 방영, '2022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2.12.)
- 2023년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 운영(2.16., 6.27.)
- 2023년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북한 방송 통신 이용실태조사' 3개 사업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3~6월)

< 한·중 방송공동제작협정 추진 >

- '15. 12. 20. : 한·중 FTA 발효
- '16. 3. 4. : 한·중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북경)
- '16. 6. 30. : 한·중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서울)
- '18. 3. 2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 참가(서울)
- '18.7.11~1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2차 후속협상 참가(북경)
- '18. 12. 3. : 한·중 방송콘텐츠 전문가 세미나 개최(서울)
- '19.1.15~17 : 한·중 FTA 서비스투자 3차 후속협상 참가(부산)
- '19. 7. 18 : 한·중 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 참가(서울)
- '20. 1. 29 : 중국 광전총국 및 상무부에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 재개 요청
- '20. 5. 28. : 한중 FTA 서비스투자 7차 후속협상 참가(세종)
- '20. 7. 2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8차 후속협상 참가(세종)
- '20. 9. 2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회기간 후속협상 참가(세종)
- '21. 2. 23.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회기간 후속협상 참가(세종)
- '21. 5. 1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회기간 후속협상 참가(서울)
- '21. 5. 28. : 한국 측 공동제작협정문(안) 관련 중국측 질의에 대한 답변서 송부
- '22. 3. 2 : 한·중국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한국측 협정 문안에 대한 중국측 의견 접수

< 방송콘텐츠분야 협력강화 >

- '18. 6. 28. : 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서울)
- '18. 9. 18. : 한·캐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캐나다)
- '18. 12. 14. : 한·태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태국)
- '19. 3. 26. :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양자면담(베트남)
- '19. 3. 28. : 한·인니 KPI 양자면담(인도네시아)

- '19. 6. 18. : 한·터키 RTUK 양자면담 및 공동제작협정 추진 MOU체결(서울)
- '19. 6. 19.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베트남 포럼 개최(서울)
- '19. 6. 20. : 한·인니 KPI, 한·태국 NBTC 양자면담(서울)
- '19. 6. 19.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개최(서울)
- '19. 6. 21. : 한-베 MIC 간 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국장급협의체 6차 회의 개최(서울)
- '19. 10. 1. : 한-메르코수르 FTA 후속협상 대응(부산)
- '19. 10. 2. : 한-러 FTA 후속협상 대응(서울)
- '19. 12. 4 : 한-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
- '20. 1. 15~16 : 한-러 FTA 후속협상 대응(러시아, 모스크바)
- '20. 2. : '한-베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송부
- '20. 2. : '한-터키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문(안) 초안 송부
- '20. 4. : 「한국-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해설서」 제작 및 배포
- '20. 6. : 한-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캐나다 문화유산부 질의에 대한 답변송부
- '20.11.24. : 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라인)
- '20.12.8.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한국측 수정안 캐나다 문화유산부 전달
- '21. 3.~6. :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논의
- '21.6.23. : 한-캐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온라인)
- '21.6.25. : 터키 측 한-터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문(안) 접수
- '21.8.12. : 캐나다 문화유산부로부터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문 수정안 수신 및 협정문안 분석, 전략 마련
- '21.11.17. :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IBCC)
- '21.12.14. : 방통위-베트남 정보통신부(MIC) 방송통신 분야 MOU 체결 및 장관급 양자면담 진행(공동위원회 의제 포함)
- '22.2.9. : 한-태국 TV프로그램 협정 관련 태국측 의견 접수
- '22.2.10. : 한-태국 TV프로그램 협정 관련 한국측 의견 전달
- '22. 2. :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운영안 논의
- '22. 3.~10. : 한-GCC FTA 4차~6차 협상 대응
- '22. 3.~ : 한-중국(3월)/ 한-태국(5월)/ 한-캐나다(7월)/ 한-터키(9월)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관련 의견 접수 및 전달
- '22. 9.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련 캐나다 측 의견 접수
- '22. 9.~11. : 한-에콰도르 SECA 7차·8차 대응
- '22. 9. : 2022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오프라인)
- '22. 11.~12.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련 의견 전달 및 접수
- '22. 12. : 한-베트남 공동제작 워크숍 개최
- '22. 12. : 2022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발간(프랑스·독일·이탈리아)
- 해외 방송시장 조사 대상국·조사 방안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3~5월), 조사 국가 선정(중국·스페인·아르헨티나, 3개국) 및 조사 실시(6월~)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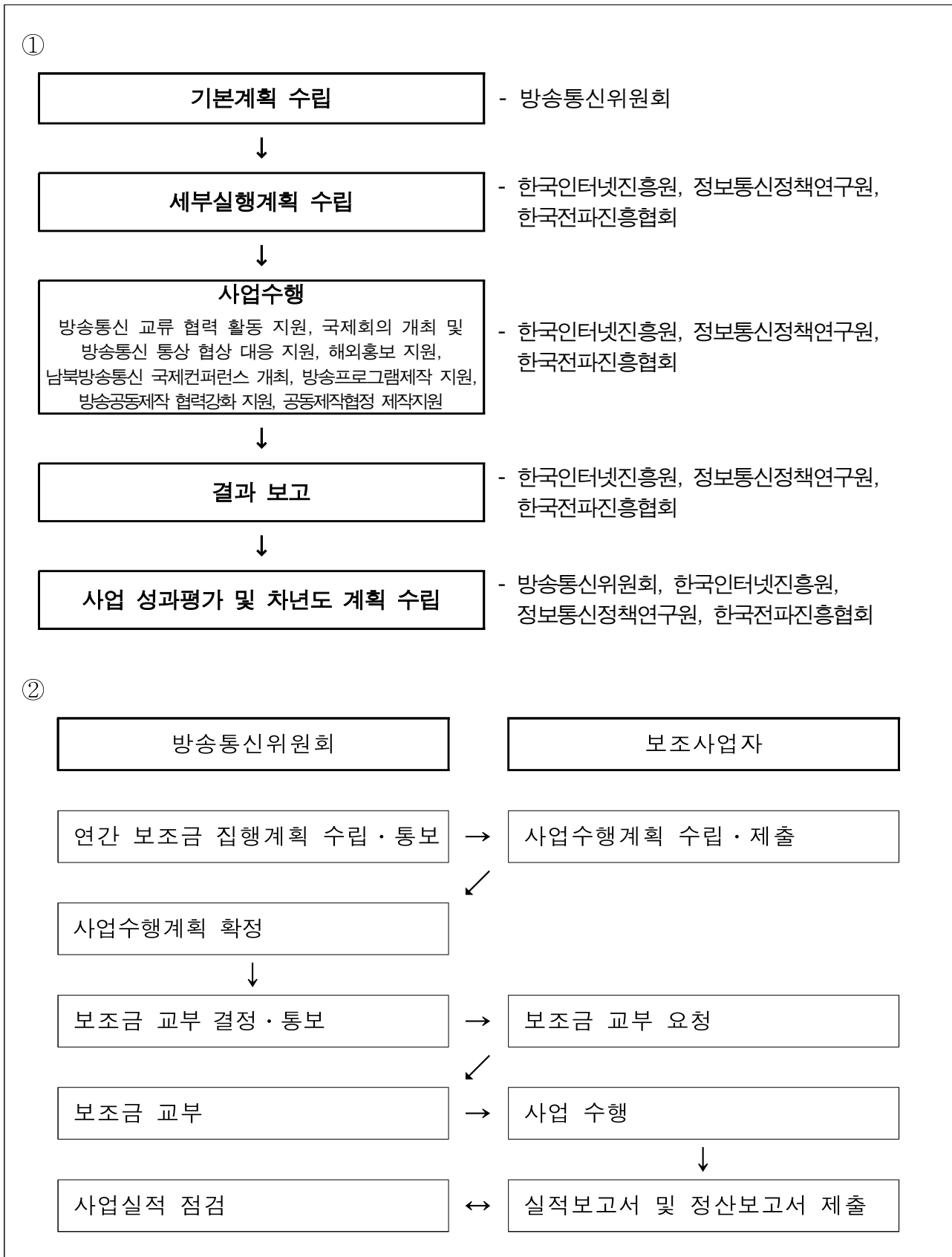
- '21.1.28~3.8 : '21년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수행기관 공모
- '21.3.19 : '21년 제작지원 수행기관 선정(MBC, KBS)
- '21.4. ~ '21. 12.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 21년 공동제작 프로그램 방영 : 빈집살래 시즌2(MBC, '22.3~'22.4)
주문을 잊은 음식점 시즌2(KBS, '22.6~'22.7)
- '21.12.28.~'22.1.19. : '22년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수행기관 공모
- '22.1.22. : '22년 제작지원 수행기관 선정(KISDI)
- '22.3.7. :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22.2. ~ '22.4. :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 '22. 4.~12.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및 완료
- 22년 공동제작 프로그램 방영 : 한·베 수출전사(실버아이, '22.12.)
히어로즈(광주방송'23.1.)
비밀의 정원(목포문화방송, '23.6.)
- '23년 내용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과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대상 사업자 공모 및 선정(2~4월)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4월~)
-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진행 및 주제 선정 등 기본 계획안 마련(6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방송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97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26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6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모 진행중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 제23조 방송법 제97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7) 재난방송 운영지원 (3135-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통신운영지원	재난방송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재난방송 운영지원	3,981	2,823	2,823	2,738	2,738	△85	△3.0

4. 사업목적

- 방송을 통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통해 태풍·지진·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인 KBS의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청각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전문 교육을 통한 재난분야 수어통역사 전문성 제고 지원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차질 없이 재난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통위 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경위

- 지진,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인프라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역량강화 및 역할 수행에 필요

□ 대통령 지시사항('19. 4. 9. 14회 국무회의)

○ 재난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 강조

- '19년 강원산불 계기 재난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수어통역사 재교육을 통한 방송현장의 전문수어통역사 수요 대응 및 긴급 재난 방송의 상시적 대비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한국전파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9조
② 사업 수행 계획 ↓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수행계획 수립·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③ 사업 확정·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1조
④ 보조금 신청 ↓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보조금 교부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3조
⑤ 보조금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3조
⑥ 사업 수행 ↓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 수행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4조
⑦ 사업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수행 실적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7조, 제18조
⑧ 보고서 제출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7조, 제19조

사 업 명
(28)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25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181	1,159	1,159	1,400	1,400	241	20.8

4. 사업목적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긴급구조 플랫폼 취약점 점검, 보안 솔루션 구축 등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및 성능을 고도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끊임없는 Wi-Fi AP(Access Point)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관제 모니터링 실시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 긴급전화에 대한 정밀측위 시험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전달성공률 등을 높여 구조 요청자의 생명·신체 구조 시 신속성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중략)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추진경위

-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0.6월)
-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7대 스마트 신산업 선정('11.10월)
- 국무총리 지시사항(위치정확도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국무총리실 제11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 '12.5월)
- 긴급구조기관 외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1월 시행)
-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청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14.12월)
-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방통위 정밀측위 시험 요구(감사원, '15.7월)
- 긴급 구조를 위한 국민안전처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15.9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요구조자) 및 긴급구조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급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 업 명
(29)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방송통신이용자 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6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클린인터넷 이용환경조성	1,520	1,663	1,663	1,629	1,629	△34	△2.0

4.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환경 조성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언어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및 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호 <생략>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 방송통신발전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추진경위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

-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12.3.16)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지정,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접근 방지 대책 강화」(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
- 국무회의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본대책 마련」(13.3.13.)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13.5.22.)
- 15개 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수립 (14.12.)
-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
- 9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3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종합계획 수립」(16.3~4)
- 11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16.5.)
- 9개 부처 및 9개 관계기관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5.)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및 100대 국정과제(70-5번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관리계획 (17.7)
- 11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19~21년)」(19.1)
- 13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제3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19~21년)」(19.6)
- 10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23)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

-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17.12.)
 - ※ 학회 및 단체, 협회, 업체 및 방심위, 정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
-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 실무협의회 개최(18.3.)
 - ※ 방통위, 방심위,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KISO, 인기협, KAIT 등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18.11.)
- 인터넷개인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19.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62건(6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
- 인터넷개인방송 등 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0.6., 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2,169건(11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20.6.)
 - ※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할 유형 및 심야시간·장시간 출연 금지 등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1.3~12.)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4,484건(13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2.4~7.)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4,635건(11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교육 콘텐츠 제작('22.7.~)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및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동영상 제작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조치('23.1.~7.)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5,799건(10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청소년 및 학부모, 인터넷이용자 및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00	정보통신망법 제41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방송통신위원회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		
② 사업수행 세부계획 승인	방송통신위원회	수행기관이 제출한 세부계획을 검토 및 승인
↓		
③ 사업수행	수행기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④ 사후 관리 및 중간 추진실적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사항 점검 및 관리
↓		
⑤ 최종보고	수행기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통신위원회 (1,393백만원)	=> (1,393백만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393백만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통신위원회 (236백만원)	=> (236백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6백만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 업 명
(30)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325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130	131
명칭	기금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7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6,317	6,515	6,515	6,463	6,463	△52	△0.8

4. 사업목적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및 역기능 피해 예방
-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사이버폭력·디지털윤리 관련 인식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동향 조사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방향 수립 지원
- (디지털윤리 교육) 올바른 디지털 이용의식 제고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사이버폭력 유해성 인지 및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 공모전,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전개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추진경위

- 2007년 : 건전한 UCC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 개최 및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발표
- 2008년 :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가칭)” TFT 구성
- 2009년 :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사업 신규 추진
- 2010년 :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1기 한국인터넷드림단” 창단
- 2010년 : 제1회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선포식 및 주간 운영
- 2011년 : 대통령 업무보고, 건전한 소통과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등을 통한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
- 2012년 : 청소년 체험형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부산 공리마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2012년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중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확대” 계획 발표
- 2013년 :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종합 대책」 중 “인터넷윤리교육 및 캠페인 홍보 추진” 등 계획 발표
- 2013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구축(한국잡월드)
- 2013년 :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중 정규 교과를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등 포함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계획」 중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계획 발표
- 2015년 : 방송통신위원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 발표
- 2015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부산공리마루→국립부산과학관)
- 2015년 : 사이버폭력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확대
- 2016년 : 사업추진 전담기관 변경(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년 : 인터넷윤리교육 방통위 일원화(“바람직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정보문화조성(범국민 정보윤리교육)”)
- 2017년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실천과제 채택
- 2018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국립광주과학관)
- 2018년 :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확대(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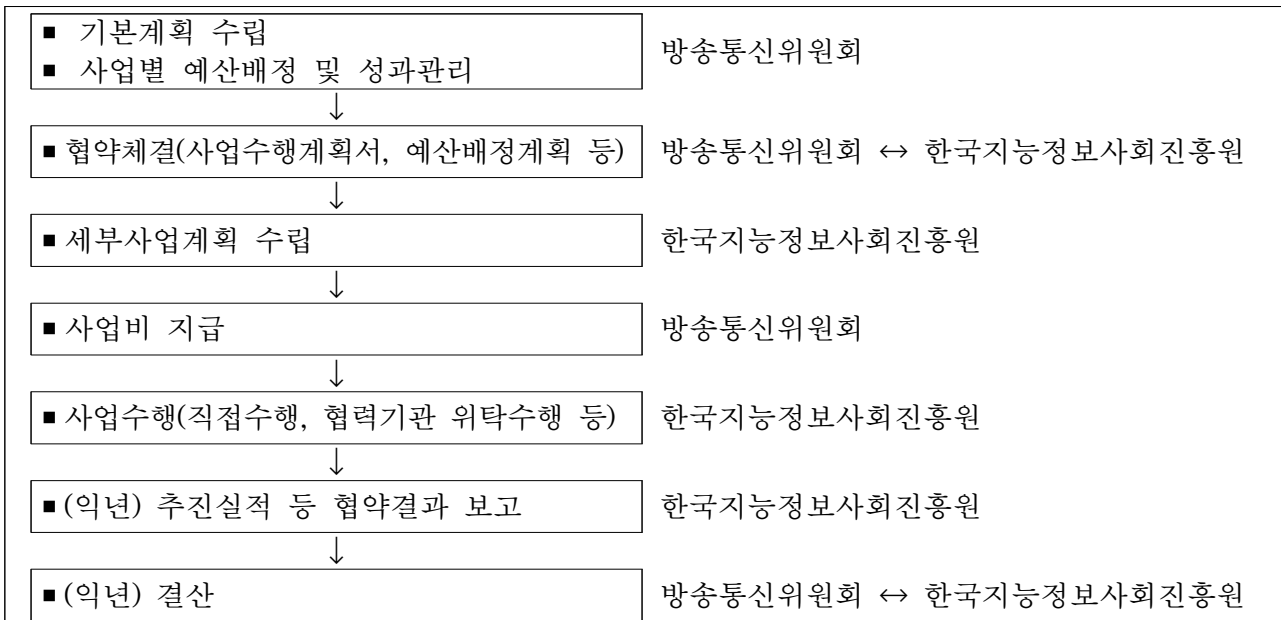
- 2019년 : 시·도 교육청 협력 청소년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국방부(군인), 여가부 (학교밖청소년) 연계 인터넷윤리 시범교육 실시
- 2019년 :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개소(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2020년 : 인터넷윤리대전 대상 대통령상 격상
- 2020년 : 서울 인터넷윤리체험관(서울시립과학관), 사이버윤리체험관 신규 개소
- 2021년 : 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어린이창의체험관) 신규 개소
- 2021년 : '100만 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체험관 운영 및 신규 구축' 국정과제 조기 목표 달성
- 2022년 : 1인 크리에이터 등 교육 대상 확대
- 2023년 : 직장인, 가족 등 교육 대상 및 디지털윤리 골든벨 등 체험형 교육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원, 일반성인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통신위원회	=> (6,515백만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74백만원)	=> (4,950백만원)	(주)한국리서치 등 7개 기관

사 업 명
(3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325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1,100	1,100	1,100	830	830	△270	△24.5

4. 사업목적

-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신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기회, 이용자 권리 침해 가능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
- 다년간에 걸친 전국 규모 패널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다양한 이해당사자(사업자·이용자·국제사회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학계·산업계·시민·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에 관한 공동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이용자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협의안 도출
 -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능정보기술 일상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방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성과를 대외에 공유하고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론화 기능을 수행
 - 경험적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여 지식 재생산 및 활성을 촉진하고, 의견 제시를 위한 환류 창구로서 국민참여·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상 및 변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시의적인 이용자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지능정보서비스 보편화에도 사각지대 없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정보 기술이 개인·단체·공공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제시
 -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서비스의 다변화된 기능과 영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현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이용자 정책 수립 및 법적·자율적 규율 방안 도출

-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플랫폼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해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및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신체·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 추진경위

[2017년]

- '17년 방송통신위원회 연두업무계획 발표 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 역설

-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IT기반 신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보호도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복합 및 새로운 기술·다양한 매체의 등장 등 방송통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리 필요”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선행연구 실시

[2018년]

-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보호 환경조성 1차 연도 사업 시행

[2019년]

- '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발표시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방송·통신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체계 확립 필요성 제시
 - ※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선제 대응 필요성 강조
- AI 국가전략 발표 시(제53회 국무회의) “글로벌 규범에 맞는 AI 윤리 기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강조
-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보호 환경조성 2차 연도 사업 시행

[2020년]

- '20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에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의 역할 및 운영 방향 명시
 - ※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민관협의회 구축 등 수행
 - ※ 민관협의회 운영, 국제 공조를 통해 AI 역기능 사전대응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3차 연도 사업 시행

[2021년]

-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비전 발표 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강조

[정책과제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 정립
- ▶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으로 새로운 이용자 보호 법체계 정비 및 이용자 중심의 정책기반 마련 제시

[4-④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 (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19.11월)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 ▶ (이용자중심의 정책기반 마련) 지능정보서비스 이해당사자와 민관 합동으로 정책네트워크 지속 운영,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중심의 정책 수립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정책기반' 마련 계획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마련 및 법제 개선 추진 등 세부 방침 명시
 - ※ 방송통신위원회,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21.1.14.)
 -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원칙의 구체적 실행지침 마련, 기존 법체계 정비 등 제시

[2022년]

- 국정과제 59-4(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명시

- '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서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자율규제 체계 및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함
- '22.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포함

[국정과제 59.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 ▶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22.8월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자율기구(플랫폼, 이용자, 중기·소상공인, 전문가 등 참여)의 운영을 지원하고 실효적 자율규제 체계 구축

[2023년]

- '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와 새로운 법체계 및 윤리기반 마련 방향 명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교부 신청 (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가 교부결정 승인
↓		
③ 사업수행 (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일부 사업의 경우 협력기관에 위탁 수행
↓		
④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적보고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⑤ (익년)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산보고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검토회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산 잔액 반납

사 업 명
(3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325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1
명칭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KCC)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조정안	확정(B)	(B-A)	(B-A)/A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170	1,170	1,170	1,970	1,970	800	68.4

4. 사업목적

- (세부사업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를 사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내역사업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위치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특허출원, 해외 판로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 (내역사업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3.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LBS 산업육성 및 사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0.6월)
-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계획(방송통신 기본계획, '11.11월)
-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경제정책조정회의, '11.1월)
-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16.1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예비사업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7. 사업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급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 업 명
(33)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3251-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인터넷 정보활용기반구축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765	3,177	3,177	4,662	4,662	1,485	46.7

4. 사업목적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현장 점검 체계 구축, 성능평가 제도 운영,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등을 보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22조의5 등)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사전조치 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에 대해 상시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9, 제64조의8 등)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의무에 대해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작성지원·검수 및 의무교육 실시
-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유통플랫폼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자율규제 적극 유도

- (DNA성능평가제도도입)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5)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 하나인 성능평가 제도 운영 및 성능평가 수행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법령 준수를 위해 성능평가 신청 시 사업자가 도입하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 기술을 대상으로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준수 기반 마련 및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사업임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구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에 필요한 적용·운용에 대한 기술지원 등 행정지원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생략>

「**令**」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0조의6

「**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생략>

「**令**」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
 -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

- 「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令」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

「法」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令」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 추진경위

- 2014. 9.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 신설
- 2015. 4.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 2015. 10.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법률이행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2016. 1. : 불법음란정보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 2016. 12. : 불법음란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17. 8. :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 2019. 1. : 정부합동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1.24., 7개 부처)
 - ※ 방통위, 과기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방심위 등 7개 부처
- 2019. 11.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업무 협약(4개부처)
- 2020. 4. :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4.23.)
 - ※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7개부처
- 2020. 6. : ‘n번방 방지법’ 관련 법 신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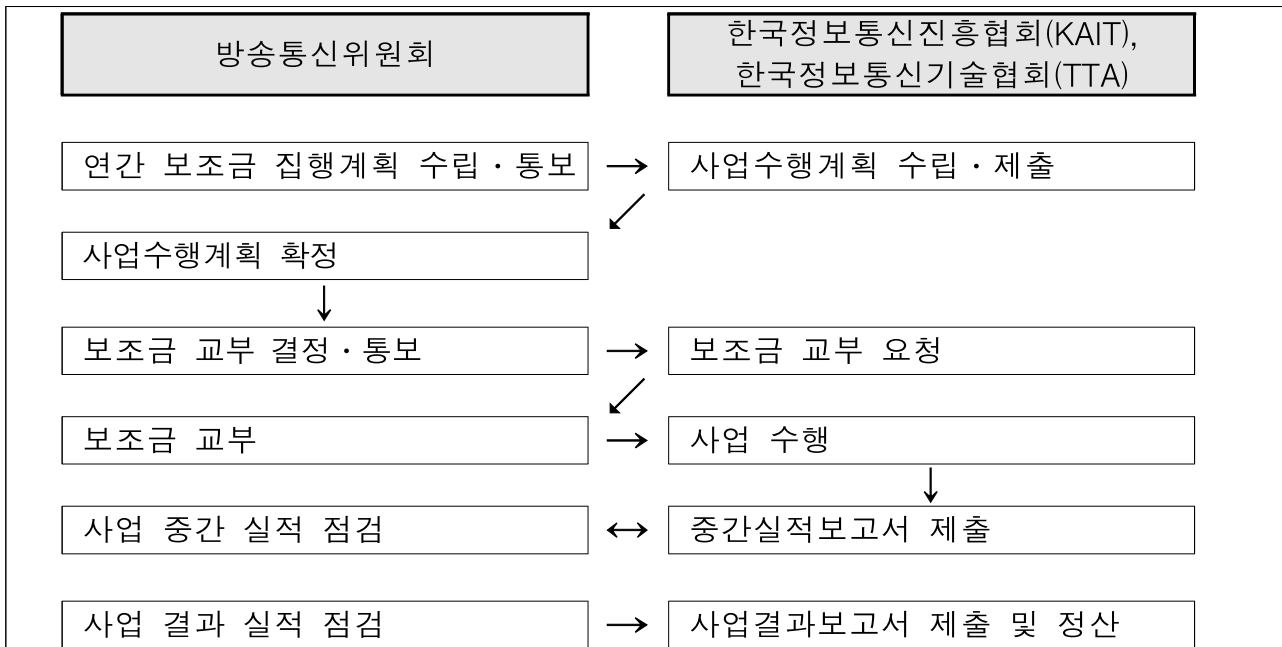
- ※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 2020. 12.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12.10.)
- ※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 2020. 12.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
- 2021. 2. :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2호)
- 2021. 7~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시행
- 2021. 12.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방통위 고시 제2021-12호)
- 2021. 12.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 발간
-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상세 안내 등
- 2021. 12.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통위 고시 제2021-15호)
- 2022. 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 안내(90개사업자)
- 2022. 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점검
- 2022. 11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이력관리시스템 시행
- 2022. 12.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통위 고시 제2022-18호)
- 2023. 1.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3. 8.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3. 12.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 '18년부터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의 내역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사업(3251-306, '16년~)과 '신종사이버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사업(3251-312, '17년~)을 통합편성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
- 사업 수혜자 : 인터넷 이용자 및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보조금법 제9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0	보조금법 제9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0조의6제2항제3호

7.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통위 (3,297백만원)	=> (3,297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297백만원)	=> (-)	해당없음
방통위 (865백만원)	=> (865백만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65백만원)	=> (-)	해당없음
방통위 (50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51-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3,230	3,230	3,230	-	-

4. 사업목적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앱접근권한 등 실태점검, 정책개발, 본인확인서비스 보급, 본인확인기관 관리 감독,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다양한 신유형 앱서비스 등장, 위치정보 융복합 서비스 증대에 따른 사업자 법규준수 실태점검 수행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정책개발 추진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안전하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취약점진단 등 관리감독 수행
-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모바일 신분증 등 온라인 본인확인 활용 확대에 따라 안전한 제도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3조의3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36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치정보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05.6월)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09.3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11.4월)
- 방통위, 아이핀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11.9월)
- 방통위, 휴대폰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12.12월)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17.3월)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17.3월)
-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7개사) 지정(‘18.3~4월)
-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19.4월)
-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5개사) 지정(‘20.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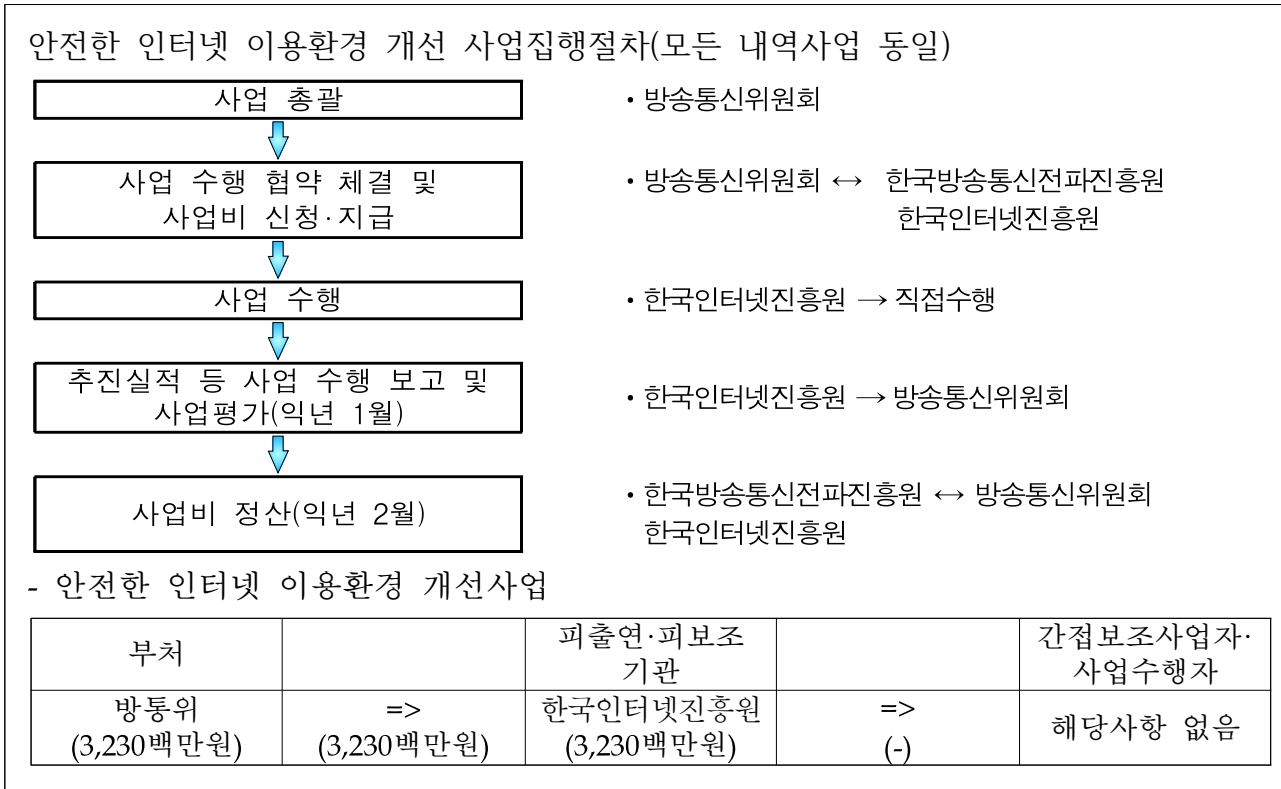
-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21.8월)
- 위치정보사업자 서면, 현장 실태점검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법 개정('21.10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기관 정기 심사('22.3월)
-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4개사) 추가 지정('22.6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정보통신망 이용자) 및 본인확인기관, 온라인 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5)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3251-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9
명칭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1,318	1,078	1,078	1,228	1,148	70	6.5

4. 사업목적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원스톱 상담제공,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마련
- (인터넷 피해 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이용자 피해 지원 및 다양한 종합정보 제공, 新유형 서비스와 소관 불분명 피해사례에 대해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피해사례 분석·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유관기관 공동대응과 법률지원 등으로 이용자 피해지원 강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운영) 대국민 접점 온라인피해 통합 상담창구인 365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각종 피해에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운영, 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보호)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제공자의 책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추진경위

- (추진배경) ‘새우튀김 리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피해는 국민들 일상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관련 각종 제도·정책이 소관에 따라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인터넷상 피해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모중
- 사업 수혜자 : 인터넷 이용자(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모중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7. 사업 집행절차

